



한·미 FTA 활용 매뉴얼

2011.12



관 세 청
FTA집행기획관실

CONTENTS

005	I	FTA 개요
009	II	수입활용
027	III	수출활용
041	IV	원산지결정기준
069	V	FTA활용지원제도
079	VI	원산지 검증

참고

088	한미 FTA 협정문 (국·영문)
190	주요기관 연락처



한 · 미 F T A 활 용 매 뉴얼

PART

1

FTA 개요



I FTA 개요

1 FTA란 무엇인가

1. FTA의 개념(Free Trade Agreement)

-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 특정국가간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협정
- 한-미 FTA의 경우 양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대하여 관세 철폐

* 양허계획 : (韓) 즉시 80.5%, 2·3년 6.8%, 5년 4.5%, 6·10년 6.5%, 기타 1.7%
(품목수 기준) (美) 즉시 82.1%, 2·3년 3.5%, 5년 7.1%, 6·10년 7.3%

2. FTA 무역의 특징

- (WTO 체제) 1품목 1세율 구조, 수입물품에 대해 단일한 관세율이 적용되고 세이프가드·반덤핑 등을 무역구제 수단으로 활용
- (FTA 체제) 1품목 多세율 구조,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별로 다른 관세율이 적용되고 원산지검증을 무역구제 수단으로 활용

3. FTA의 경제적 효과

무역효과

- 관세인하로 체결국간 신규무역 창출
- 관세인하로 수입 거래선 전환 (非체결국→FTA체결국)
- 국내 기업들이 기존 생산설비를 재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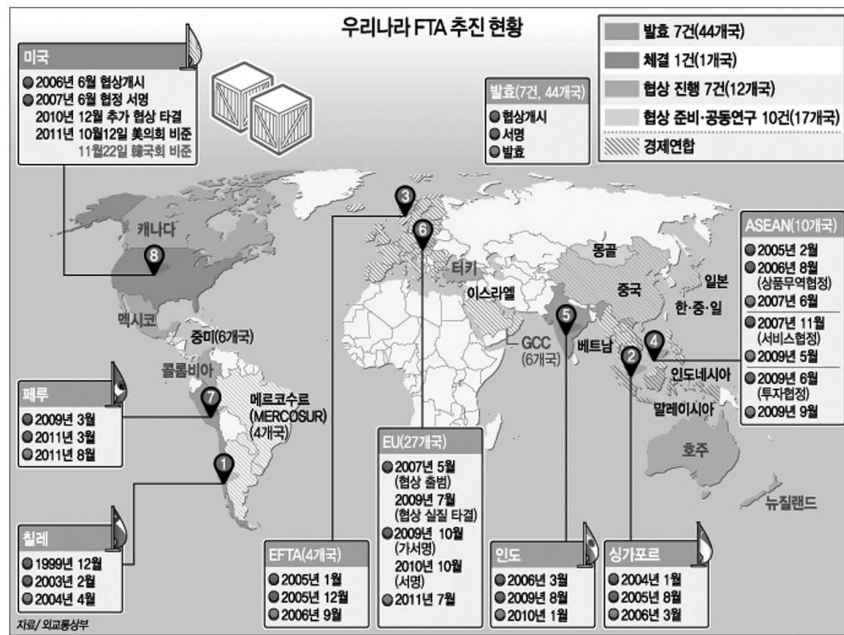
시장효과

- 무역장벽 해소로 시장확대 등 규모의 경제 발생
- 국내 타 국가 기업의 국내시장 진출로 경쟁심화
- 국내시장 진입을 위해 제3국기업의 투자 증가

2 우리나라의 FTA추진 현황

1. FTA 추진현황

- 칠레 · EFTA · 아세안 · EU 등 44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으며, 미국과의 FTA도 체결을 완료하여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



*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자유무역연합체

* EU(유럽연합) :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체코, 키프로스, 헝가리,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몰타,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27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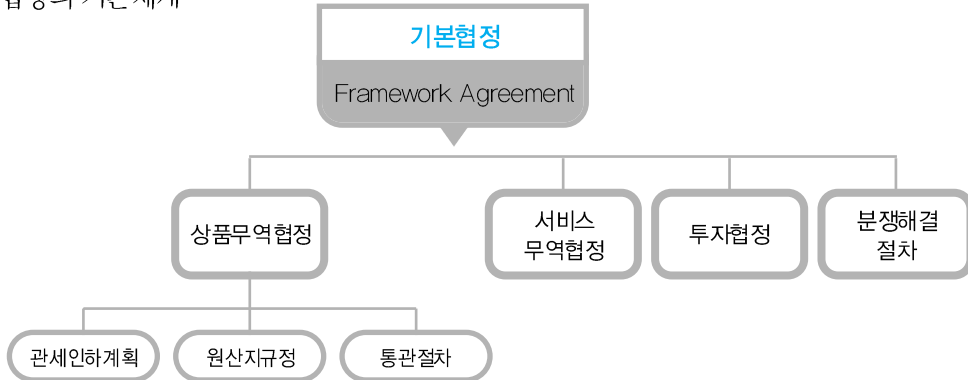
2. FTA 교역비중

-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은 25% 수준이며,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약 35%까지 증가 전망 (세계 경제의 61%가 우리 경제영토로 편입 예상)

3 FTA 법령체계

1. FTA 협정과 국내법령으로 구성

○ 협정의 기본체계



○ 협정과 국내법령



2. 법령 적용의 원칙

☞ 법이 많은데 어느 법부터 적용합니까?

- 국내법이 협정과 상충되면 협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협정의 영문과 국문이 상충되면 영문이 우선합니다.
- FTA 관세특례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세법을 준용합니다.

PART **2**

수입활용



II 수입 활용

1 수입물품의 품목번호 확인하기

1. 품목번호란?

-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중심이 되어 제정한 HS협약에서 무역통계 · 관세징수 등의 목적으로 상품별로 부여한 코드이며 대부분의 국가가 동 협약에 가입
 - 6단위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된 코드를 사용하나,
 - 7단위 이하는 각 국가별로 세분하여 각기 달리 사용
- 우리나라는 10단위까지 세분화하고 있고, 미국 · EU는 8단위 사용

품목분류에서 2단위는 류, 4단위는 호, 6단위는 소호라고정의
예를 들어진주목걸이의 HS CODE 6단위는 7116.10호임

71 류 16 호 10 소호 ⇨ 6단위까지 국제적으로 공통

우리나라는 이를 다시 세분하여 천연진주로 만든 것은 7116.10.1000으로,
양식진주로 만든 것은 7116.10.2000로 분류하고 있음

2. 정확한 품목번호 확인은 FTA의 기본

- 품목번호에 따라 FTA 협정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이 달라짐

3. 품목분류 확인 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품목분류 > 품목분류검색
- 품목분류가 어려운 경우 관할지 세관 또는 관세사에게 지문을 구하거나,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요청하여 확인

2 FTA 관세 혜택 알아보기

1. 협정관세 적용여부 확인

-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한-미 FTA 협정에 의하여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인지 확인
- 기본세율*과 협정세율**이 어느 정도 인지 확인

* 기본세율 : FTA와 관계없이 일반수입시 부과되는 관세율

** FTA가 발효되면서 협정에 따라 철폐되거나 인하되어 부과되는 관세율

활용 Tip 협정관세 적용 대상 품목 및 세율 확인

- ▶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 FTA포털 → 협정세율 및 원산지기준 검색 → '수입' 선택 → 국가명을 미국 선택 → 해당품목 검색

2. FTA 혜택 확인하기

- FTA 협정을 적용받지 않고 수입했을 때 적용되는 '기본세율'과 'FTA 협정세율'의 차이만큼 관세혜택이 발생

활용 Tip 미국산 테니스라켓 (HS 9506.51-0000)의 관세혜택

관세혜택 (8%) = 일반세율(8%) - FTA 협정세율(0%)

- ① 테니스 라켓은 양허유형 A로 발효와 동시에 관세 철폐(0%)
- ② 100만원 상당 수입시 약 88,000원의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절감

한-미 FTA 발효전

- ① 과세표준: 1,000,000원
 - ② 관세: ①×8%=80,000원
 - ③ 부가세과표: ①+② = 1,080,000원
 - ④ 부가세: ③×10% = 108,000원
- 〈세금합계〉 188,000원

한-미 FTA 발효후

- ① 과세표준: 1,000,000원
 - ② 관세: ①×0%=0원
 - ③ 부가세과표: ①+② = 1,000,000원
 - ④ 부가세: ③×10% = 100,000원
- 〈세금합계〉 100,000원

☞ FTA혜택품목여부, 관세율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HS품목번호 숙지 필요

3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하기

1. 원산지증명서 요청 및 수령

- 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수입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령
- 한-미 FTA의 경우 수입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서 미수령시 수입자가 직접 발급 가능

2. 원산지증명서 작성하기(수입자)

- 일반적으로 다른 FTA는 협정에서 지정한 별도 양식이 있으나, 한-미 FTA는 아래 8가지 내용이 기재된 자율방식임 (형식도 자율)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기재내역〉

- ① 필요한 경우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정보를 포함하여, 증명인의 성명
- ② 상품의 수입자 (이는 경우에 한한다)
- ③ 상품의 수출자 (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 ④ 상품의 생산자 (이는 경우에 한한다)
- 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 ⑥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⑦ 증명일, 그리고 ⑧ 포괄증명의 경우, 증명 유효기간

〈한-미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 ◆ (증명서 반복사용) 1건의 원산지증명서(포괄증명)를 가지고 증명일로부터 12개월 동안 동일한 상품의 복수선적분에 대하여 적용가능
-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4년간 유효
 - * 한-아세안(6월), 한-싱가포르·한-인도·한-EFTA·한-페루·한-EU(1년), 한-칠레(2년)

※ 한-미 FTA의 경우 다른 협정보다 발급권자 확대, 유효기간(4년), 반복사용(12월)이 가능하여 다른 협정에 비하여 간편하게 활용이 가능

- ▶ 우리나라는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위하여 필수 기재항목 8가지가 포함된 정형화된 「권고 서식」을 마련

4 협정관세 적용신청

1.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

-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를 작성 후 세관에 신고
 - * 원산지증명서 내용을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입력하여 신고
- 세관에서는 수입통관 심사시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신고건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
 - * 이 경우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에 '원본대조필 스탬프'를 날인하여 제출할 수 있음

양식 원본대조필 스탬프 양식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 서명

- 수입자가 수입통관 당시에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한 경우와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따라 특혜관세 신청절차가 다름

◇ 수입통관 전에 원산지증명서를 입수한 경우

-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전산으로 신고

◇ 수입통관 전에 원산지증명서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 수입통관 시점에 원산지증명서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까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
 - *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세관에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신청하면 차액과 가산금 환급가능

◎ 관련근거: 한-미 FTA 협정 제6.19조제5항

양식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양식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①신고번호 : XXXXX-XX-XXXXXXXX-X	②신고일자 : YYYY/MM/DD	
③수입자 : (상호) XXXXXXXXXXXXXXXXXXXX (성명) XXXXXXXXXXXX (주소) XX (전화번호) XXXXXXXXXXXXXXXXXXXX (FAX) XXXXXXXXXXXX (전자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 (통관고유번호) XXXXXXX-9-99-9-99-9		
④협정관세 신청구분 : [X] (A:수리전, B:수리후)		⑤신청일자 : YYYY/MM/DD
⑥수출자 : (상호) XXXXXXXXXXXXXXXXXXXX (국가명) XX (성명) XXXXXXXXXXXX (주소) XX (전화번호) 999-99-9999 (FAX) XXXXXXXXXXXX		
⑦생산자 : (상호) XXXXXXXXXXXXXXXXXXXX (성명) XXXXXXXXXXXX (주소) XX (전화번호) 999-99-9999 (FAX) XXXXXXXXXXXX		
999관 ⑧원산지증명서류 : [X] (1:원산지증명서, 2:사전심사서, 3:동종동질물품)		
⑨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 [X] (1:기관, 2:자율(수출자), 3:자율(생산자), 4:자율(수입자))		⑩원산지 : XX
⑪기관명 및 종류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 (1:국가기관, 2:상공회의소, 3:기타)		
⑫발급번호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⑬발급일자 : YYYY/MM/DD
⑭총순증량 : 999,999,999 XXX		
⑮적출국 : XX	⑯적출항 : XXXXXXXXXXXXXXXXXXXX	⑰출항일 : YYYY/MM/DD
⑱환적국 : XX	⑲환적항 : XXXXXXXXXXXXXXXXXXXX	⑳환적일 : YYYY/MM/DD
㉑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 [X] (Y:발급, N:미발급)		㉒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국가 : XX
㉓제3국 송품장 발급여부 : [X] (Y:발급, N:미발급)		㉔제3국 송품장 발급국가 : XX
㉕원산지인증수출자 유무 : [X] (Y:있음, N:없음)		
㉖원산지인증수출자 번호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㉗품명 : XX		
㉘모델·규격 : XX		
㉙협정적용 순증량 : 999,999,999 XXX		㉚분할수입 : [X] (Y:분할, N:전량)
㉛분할차수 : 999		㉜HS번호 : 9999.99
㉝협정관세율(구분) : 9,999.99(XX XXXX)		
㉞원산지결정기준 : [X] (A:완전생산, B:세번변경, C:부가가치, D:조합기준, E:역외가공, F:기타, G:자율발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류를 갖추고 이를 통하여 원산지물품임을 확인하였기 위와 같이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합니다.		

별지 제9호 서식 기재요령

협정관세적용신청서 기재요령

항목	작성요령	작성예
①신고번호	○ 수입신고서 ①항목의 신고번호를 기재	40620-11-0700105-
②신고일자	○ 수입신고서 ②항목의 신고일을 기재	2008/01/15
③수입자 - 상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FAX - 전자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통관고유부호	○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 관련사항 기재 - 납세의무자 상호를 기재 - 납세의무자의 성명을 기재 -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기재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기재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FTA번호 기재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전자주소 기재 -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번호를 기재 - 관세청장이 지정한 통관고유부호 기재	- 모나리자(주) - 홍나리 -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5 - 02-402-7896 - 02-402-8816 - trade@monalisa.com - 112-81-66062 - 모나리자771025
④협정관세 신청구분	☒ (A:수리전 B:수리후) (필수)	- 수리전 A, 수리후 B
⑤신청일자	○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자를 기재	- 2008/02/01
⑥수출자 - 상호 - 국가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FAX	○ 체결상대국의 수출자 관련사항 기재 - 원산지증명서상의 회사명을 기재 -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가 소재하는 국가명 (통계부호표 국가명 참조) - 원산지증명서상의 대표자성명을 기재 - 원산지증명서상의 주소지를 기재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기재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FAX번호 기재 (수입자가 아는 경우에 한함)	- Micro Corporation - 미국의 경우 US - Alex Joe - One Microsoft way Redmond WA 98052 - 1-425-882-8080 - 1-425-880-8090 *(국가코드)-(지역번호)-(전화번호) 순으로 기재
⑦생산자 - 상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FAX	○ 체결상대국의 생산자 관련사항 기재 - 회사명을 기재 - 대표자성명을 기재 - 회사의 주소지를 기재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기재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FTA번호 기재 * 생산지관련 정보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상에 생산자가 기재되었거나 수입자가 알고 있을 때에만 기재	- CBA Corporation - Steven Jobs - 1285st Redmond WA 98052 - 1-425-882-8010 - 1-425-882-8010 *(국가코드)-(지역번호)-(전화번호) 순으로 기재
⑧원산지증빙서류	○ 원산지물품 확인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근거자료 기재 - 원산지증명서 등: "1"로 기재 - 사전심사서: "2"로 기재 -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동종동질물품: "3"로 기재	- 수입신고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고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 1

항목	작성요령	작성예
⑨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수정)	○ 원산지증명서 발급지를 기재 - 수입자 추가 - 각 발급주체별로 입력 ①기관발급, ②수출자, ③생산자, ④수입자	-미국산 물품을 한국의 수입자가 신고하는 경우 ④수입자로 신고
⑩원산지	○ 원산지증명서류상의 원산지를 기재 - FTA 원산지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원산지	-원산지증명서상의 원산지가미국인 경우: USSG
⑪기관명 및 종류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명을 기재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종류를 기재 - 국가기관인 경우: "1" 로 기재 - 상공회의소인 경우: "2" 로 기재 - 기타의 비국가기관: "3" 으로 기재 * ⑨번 항목이 "1" 인 경우에만 기재	-싱가포르 세관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인 경우: Singapore Customs [1] *미국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⑫발급번호	○ 원산지증명서의 일련번호 기재 * 다만 사전심사서의 경우 승인번호 기재 * 동종동질물품의 경우 해당HSK 기재	- SCCON200603010001 *미국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⑬발급일자	○ 원산지증명서상의 발급일자 기재 - 기관발급의 경우: 발급일자를 기재 - 자율증명의 경우: 서명일자를 기재 * 다만 사전심사서의 경우 승인일자 기재 * 동종동질물품의 경우 기재 생략	-발급일자가 2011.11.11인 경우: 2011/11/11
⑭총순중량	○ 원산지증명서상의 총순중량을 기재	-총순중량이 1000KG이면 1000KG기재
⑮적출국	○ 선하증권(B/L)상의 선적국을 기재 - 선적국의 국가부호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선적국인 미국인 경우: : US
⑯적출항	○ B/L상의 선적항을 기재	-적출항이 싱가포르 로스앤젤레스 항인 경우: Losangeles
⑰출항일	○ B/L상의 B/L 발행일을 기재	-B/L상의 발행일(Date of issue of B/L)이 2011.11.11 경우: 2011/11/11
⑱환적국	○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를 통하여 확인된 환적국을 기재	-로스앤젤레스 출발, 일본에서 환적한 경우: JP
⑲환적항	○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를 통하여 확인된 환적항을 기재	-환적항이 요코하마 항구인 경우: Yokohama
⑳환적일	○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를 통하여 확인된 환적일을 기재	-환적일이 2011.11.11인 경우: 2011/11/11
㉑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 생산국의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다른 계약상대 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여부를 기재 - 연결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Y'로 기재 - 연결원산지증명서가 미발급된 경우: 'N'로 기재 * 한·아세안 FTA에 한함	-베트남산 물품에 대하여 싱가포르 에서 재수출원산지증명서를 발행 하는 경우: [Y] *미국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항목	작성요령	작성예
㉒연결원산지 증명서 발급국가	○ 연결원산지증명서를 최초로 발급한 국가의 국가 부호를 기재	- 발행국이 베트남인 경우: VN
㉓제3국송품장 발급여부	○ 제3국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Y' ○ 제3국 송품장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N'	-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 'Y' 기재
㉔제3국 송품장 발급국가	○ 제3국 송품장 발급한 국가의 국가부호를 기재 (통계부호표 국가코드기재)	- 일본에서 제3국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 JP기재
㉕원산지 인증수출자 유무	○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Y' ○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 'N'	- 인증수출자인 경우 Y를 기재 * 미국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㉖원산지 인증수출자 번호	○ 원산지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	- 원산지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 * 미국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㉗품명	○ 수입신고서 ㉔항목의 품명을 기재	- Aviation engine oil
㉘모델·규격	○ 수입신고서 ㉔항목의 모델·규격을 기재	- AEO-100S
㉙중량	○ 수입신고 물품 중 협정관세적용신청 물품의 순중량을 기재 - 원산지증명서를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분할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순중량을 기재	- 원산지증명서상의 유탄유 1,000kg 중 500kg에 대해 수입신고 및 협정 관세 적용 신청하는 경우: 500kg
㉚분할수입	○ 원산지증명서 분할수입시 기재	- 원산지증명서분할신고시: Y
	- 원산지증명서 분할수입시: 'Y' 로 기재	
	- 원산지증명서 전량신고시: 'N' 로 기재	
㉛분할차수	○ 원산지증명서 분할수입시 분할차수 기재	- 2회차 분할신고시: 2
㉜HS부호	○ 원산지증명서상의 HS부호 6단위를 기재 * 수입신고서의 HS와 C/O상의 HS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C/O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C/O에 HS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협정의 경우 수입신고서상의 HS를 기재	- C/O상 6단위 HS: 2710.19
㉝협정관세율(구분) -	○ FTA 협정관세율(관세율 구분부호) 기재 - 적용받고자 하는 FTA의 협정관세율과 해당 관세율 구분부호를 기재	
㉞원산지기준(수정)	○ 원산지물품의 종류를 기재 - 완전생산물품: 'A'로 기재 - 세번변경기준 총족물품: 'B'로 기재 - 부가가치기준 총족물품: 'C'로 기재 - 조합기준 총족물품: 'D'로 기재 - 역외가공기준 총족물품: 'E'로 기재 - 기타 원산지기준 총족물품: 'F'로 기재 - 수출자가 자율로 발급한 경우: 'G'로 기재	- 원전생산물품의 경우: [A] - 세번변경과 부가가치 조합 기준의 경우: [D] - 세번변경과 부가가치 선택 기준의 경우 - 세번변경 기준 적용: [E] - 부가가치 기준 적용: [C] 수출자가 자율로 발급하여 원산지결정 기준 확인이 어려운 경우: [G]

2. 관세율할당 품목 관련 사항

- 관세율할당 품목(TRQ*품목)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수량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품목으로서, 그 구체적인 적용방식은

「①선착순 배분, ②수입권 공매, ③수입권 배분」 방식으로 구분

* TRQ(Tariff Rate Quotas) : 협정에서 정한 수량만큼 저율관세가 부과되는 물품

- ① 선착순 배분방식 :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순서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별도 추천서가 필요 없음

⇒ 잔여수량은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한도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은 당일 잔여수량을 신고된 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 대상품목(3품목) : 납치(1,530톤), 명태(4,000톤), 민어(1,000톤)

- ② 수입권 공매방식 : 공매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해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는 수입자에게 수입물량을 배분하는 방식 (추천서 필요)

* 대상품목(6품목) : 분유 · 연유, 버터, 천연꿀, 감자, 오렌지, 인삼

- ③ 수입권 배분방식 : 배분기관이 해당 물품을 전년도 수입량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식 (추천서 필요)

* 대상품목(10품목) : 식용유장, 치즈류, 보리, 맥주맥, 옥수수전분, 식용대두, 사료용식물, 조제분유, 보조사료, 텍스트린

⇒ 수입권 공매방식(②)과 수입권 배분방식(③)은 주무부 장관(추천대행기관 포함)의 추천을 받은 후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

별첨

한·미FTA 관세율 할당(Tariff-Rate Quotas) 품목

번호	품목	협정문상 HS 코드	HS 2012 코드	최초년도 할당 물량	추천대행기관	운영 방식
1	넙치	0303-39-0000	좌동	1,530톤	-	선착순
2	명태	0303-79-1000	0303-67-0000	4,000톤	-	선착순
3	민어	0303-79-9095	0303-89-9091	1,000톤	-	선착순
4	탈지분유	0402-10-1010	좌동	5,000톤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공매
		0402-10-1090	좌동			
		0402-10-9000	좌동			
		0403-90-1000	좌동			
	전지분유	0402-21-1000	좌동			
		0402-21-9000	좌동			
		0402-29-0000	좌동			
	연유	0402-91-1000	좌동			
		0402-91-9000	좌동			
		0402-99-1000	좌동			
0402-99-9000		좌동				
5	식용 유장	0404-10-1010	0404-10-1019	3,000톤	한국 유가공 협회	수입권배분
		0404-10-1090	0404-10-1099			
		0404-10-2110	0404-10-2119			
		0404-10-2120	0404-10-2129			
		0404-10-2130	0404-10-2139			
		0404-10-2190	0404-10-2199			
		0404-10-2900	0404-10-2990			
6	버터	0405-10-0000	좌동	200톤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공매
		0405-90-0000	좌동			
7	치즈류	0406-10-1010	좌동	7,000톤	한국 유가공 협회	수입권배분
		0406-10-1020	좌동			
		0406-10-1090	좌동			
		0406-20-0000	좌동			
		0406-30-0000	좌동			
		0406-90-1000	좌동			
		0406-90-2000	좌동			

번호	품목	협정문상 HS 코드	HS 2012 코드	최초년도 할당 물량	추천대행기관	운영 방식
		0406-90-3000	좌동			
		0406-90-4000	좌동			
		0406-90-9000	좌동			
8	천연꿀	0409-00-0000	좌동	200톤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입권공매
9	감자	0701-90-0000	좌동	3,000톤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입권공매
10	오렌지	0805-10-0000	좌동	2,500톤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입권공매
11	보리	1003-00-9010	1003-90-2000	2,500톤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입권배분
		1003-00-9020	1003-90-3000			
12	맥주맥, 맥아	1003-00-1000	1003-90-1000	9,000톤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입권배분
		1107-10-0000	좌동			
13	옥수수전분	1108-12-0000	1108-12-1000	10,000톤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입권배분
			1108-12-9000			
14	식용 대두	1201-00-9000	1201-90-9000	10,000톤	대두 가공업자 연합체	수입권배분
15	인삼 (수삼·백삼)	1211-20-1100	1211-20-1110	5.7톤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입권공매
			1211-20-1190			
		1211-20-1210	좌동			
		1211-20-1220	1211-20-1290			
1211-20-1240						
16	사료용식물	1214-90-9090	좌동	200,000톤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농협중앙회	수입권배분
17	조제분유	1901-10-1010	좌동	700톤	한국유가공협회	수입권배분
		1901-10-1090	좌동			
18	보조사료	2309-90-2010	좌동	5,500톤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 사료협회	수입권배분
		2309-90-2020	좌동			
		2309-90-2099	좌동			
		2309-90-9000	좌동			
19	덱스트린	3505-10-4000	3505-10-4010	14,000톤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배분
			3505-10-4090			
		3505-10-5000	3505-10-5010	"	"	"
			3505-10-5090			

양식 관세할당 물량 협정관세 적용 추천서 양식

한-미 FTA 상품무역협정 관세율 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전산용)		
※ 추천번호:		
1. 신청인(납세의무자)		
상호:		
주소: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2. 수입자		
상호:		
주소: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무역업등록번호:
3. 추천내역		
① 세번부호(HS):		
② 품명 및 규격:		
③ 추천 수량:	④ 금액:	
⑤ 원산지(공급자)		
⑥ 용도		
① 세번부호(HS):		
② 품명 및 규격:		
③ 추천 수량:	④ 금액:	
⑤ 원산지(공급자)		
⑥ 용도		
① 세번부호(HS):		
② 품명 및 규격:		
③ 추천 수량:	④ 금액:	
⑤ 원산지(공급자)		
⑥ 용도		
※ 추천조건:		
※ 유효기간:	년 월 일까지	
※ 근거법령: 000법 제 00호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함		
20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인)		

5 관련 서류 보관하기

1. 관련 서류 보관 이유

- 수입자는 수입통관 후 원산지 등 협정관세 적용의 적법성을 검증 받을 수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서와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 입증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수입통관시 적용받은 FTA 협정관세가 배제(관세추징)되며, 시안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음

2. 서류 보관기관 및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 서류보관기간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 한-미 FTA 협정 제6.17조 기록유지 조건
-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7종)

- ①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 ② 수입신고필증
- ③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④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⑤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⑥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함)
- ⑦ 지적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 관련근거: FTA특례법 시행령 제 13조 제1항

6 수입 관련 의무와 책임

1. 한-미 FTA는 원산지규정에 “수입 관련 의무”를 규정

- 세관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FTA 원산지규정 중 어떠한 요건이라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
- 아래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함에 있어 유효하지 아니한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입자를 처벌할 수 없음
 - 신청시 과실·중과실 또는 사기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고, 신청이 유효하지 아니함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정정 후 관세를 납부한 경우
- 수입자는 수입국 세관이 해당 물품의 특혜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또는 행위를 제공하여야 함
 - 수입품의 원산지 및 관세율, 원산지증명서류 사본, 수입신고가 잘못된 경우 서류 정정 후 관세 납부, 원산지 정보의 제공 주선 등
- 수입국 세관은 수입된 상품이 협정상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수입 당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수입일 이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허용하고, 원산지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공한 경우 납부하였던 관세의 초과분을 환급

관련규정 수입 관련 의무 (협정 제 6.19조)

1. 각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 신청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무효라고 서면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는 한, 이장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수락한다.
2. 당사국은 수입자가 이장의 어떠한 요건이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 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3.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경우에는 특혜관세대우에 대한 유효하지 아니한 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수입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 가. 수입자가 그러한 신청을 함에 있어 과실·중과실 또는 사기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납부하여야 할 모든 관세를 납부한 경우, 또는

- 나. 수입자가 그러한 신청이 유효하지 아니함을 인지하는 때에 신속하고 자발적으로 그 신청을 정정하고 납부하여야 할 모든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 가. 수입서류에서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신고할 것
 - 나. 적용가능한 관세율을 적시할 것
 - 다. 제6.15조에 기술된 서면 또는 전자증명이 신청의 기초를 이루는 경우, 가호에서 언급된 신고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그 증명을 소지할 것
 - 라. 증명이 신청의 기초를 이루는 경우, 요청에 의해 그 사본을 수입당사국에 제공
 - 마. 수입자가 가호의 신고가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을 때, 수입서류를 정정하고 납부하여야 할 모든 관세를 납부할 것
 - 바. 수출자의 증명이 신청의 기초를 이루는 때에,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자가 증명을 작성하는데 의존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주선할 것
 - 사. 생산자의 증명이 신청의 기초를 이룰 때에, 수입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을 마련할 것
 - 1) 생산자가 자신의 증명을 작성함에 있어 의존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생산자 외의 주선, 또는
 - 2) 그 생산자가 자신의 증명을 작성함에 있어 의존한 모든 정보를 생산자가 제공하도록 하는 수출자와의 주선, 그리고
 - 아.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가 신청의 기초를 이룰 때에,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품이 제6.13조에 따라 여전히 원산지 상품이 되는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포함하여 제6.1조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그 상품의 수입자가 수입 당시 특혜관세대우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던 경우, 수입자가 수입일 후 1년 이내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당사국에게 다음을 제시하는 경우, 상품이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결과로 납부하였던 초과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가. 상품이 수입시점에서 원산지 상품이었다는 서면 또는 전자적인 신고나 진술
 - 나. 증명이 그 신청의 기초를 이루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증명의 사본이나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른 정보, 그리고
 - 다. 수입당사국이 요청하는 그 상품의 수입에 관련된 그 밖의 문서



한 · 미 F T A 활 용 매 뉴얼

PART **3**

수출활용



III 수출 활용

1 FTA 관세 혜택 알아보기

1. 수출품의 미국 HS 품목번호 확인하기

- 한국과 미국에서 분류하는 HS 품목번호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수출품의 미국 HS번호를 확인해야 함
- 확인한 HS번호에 따른 미국측 양허표에서 협정관세율을 확인

활용 Tip 미국의 협정 관세 적용 대상 품목 및 세율 확인

- ▶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 FTA포탈 → 협정세율 및 원산지기준 검색 → 수출 선택 → 국가명을 미국' 선택 → 해당품목 검색
- * 단, 현재 관세청 자료는 HS 2002기준으로 작성되어 미국측의 정확한 HS 확인이 필요한 경우, 미국 수입자나 미국 관세청 홈페이지(www.usict.gov/tata/hts)를 통해 확인할 것

2. FTA혜택 확인하기

- FTA 협정을 적용받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일반세율과 FTA협정세율의 차이만큼 관세 혜택이 발생

활용 Tip 한국산 전기담요(HS 6301.10-00)의 미국 수출시 관세혜택

관세혜택 (11.4%) = 일반세율 (11.4%) - FTA 협정세율 (0%)

- ① 한국산 전기담요는 양허유형 A로 발효와 동시에 관세 철폐(0%)

2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하기

1. 원산지 결정기준의 필요성

- FTA는 체결국가간 무역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협정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혜택을 부여
- 우리나라로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이 필요함

2.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

- ▶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 FTA포탈 → 협정세율및 원산지기준 → 국기명을 '미국' 선택 → 해당 품목의 원산지 결정기준 검색

※ 관세청에서 무료로 배포중인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원산지 판정가능

※ FTA-PASS는 국제원산지정보원(<http://www.origin.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원산지 결정기준의 구분

- 원산지 결정기준은 크게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구분
 - 일반기준은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 규정
 - * 일반기준은 기본원칙과 분야별 특례(보충적 기준)로 구분
 - 품목별기준은 해당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각각의 규정
 - ⇒ 원산지를 결정할 때는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을 모두 적용
 - *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IV장(원산지결정기준) 참고

3 원산지증명서 발행하기

1. 원산지증명서가 왜 필요한가요?

-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물품이라고 해서 모두 우리나라 제품이 아닌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물품을 체약국으로 수출했다고 해서 모두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없음
- 미국에서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한국산'임을 입증해야함

※ 수출자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인지 판정하는 것이 중요

2. 원산지증명 방식

-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방식은 협정에서 정한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하는 기관발급, 수출자 등이 직접 발급 가능한 자율발급으로 구분
- 한-미 FTA의 경우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직접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

참고 주요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구분	미국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페루*	EU
증명방식	자율증명	자율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기관증명	기관+자율증명	자율증명
발급자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수출자	세관, 상공회의소, 자유무역관리원	수출자	세관, 상공회의소	세관·상공회의소+수출자	수출자
서식	정형화된 양식 없음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국가별 증명서식	송품장 신고방식	통일증명서식	통일증명서식 또는 송품장 신고방식	송품장 신고방식
유효기간	4년	2년	1년	1년	6개월	1년	1년
사용언어	영어, 한글 (요구시 번역본 제출)	영어 사용원칙					
분할수입	가능	가능					
사용회수	12개월 내에 포괄발급 가능	1회 사용원칙					

* 발효이후 5년간(15.7월까지)은 기관발급 원칙(예외적으로 자율증명), 그 이후는 자율증명

3.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 일반적으로 다른 FTA는 협정에서 지정한 별도 양식이 있으나, 한-미FTA는 지정 양식이 없고 다만 아래 8가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 우리나라는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위하여 8가지 내용이 포함된 정형화된 권고 서식을 마련하여 운영중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기재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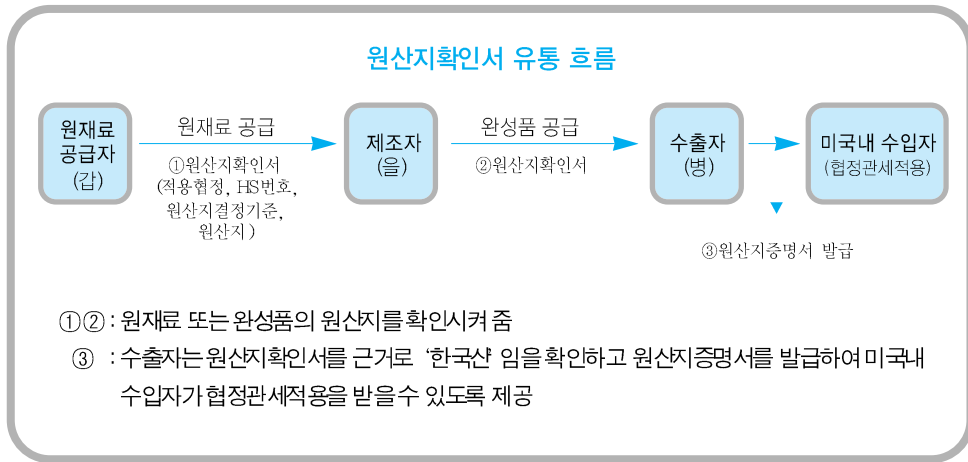
- ①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하여, 증명인의성명
- ② 상품의 수입자 (아는 경우에 한한다)
- ③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 ④ 상품의 생산자 (아는 경우에 한한다)
- ⑤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 ⑥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⑦ 증명일, 그리고
- ⑧ 포괄증명의 경우, 증명 유효기간

◎ 관련근거 : 한-미FTA협정 제6.15조 제2항

4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원산지확인서 작성하기

1. 원산지확인서

- 최종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재료(부품)를 공급하는자가 공급받는자의 요청에 의거,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를 판정하여 작성하는 서류



◎ 관련근거 :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및 별지 제4호 서식

- 국내에서 공급받는 재료를 모두 '한국산'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외국에서 수입한 재료를 가공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한국산이 아닐 수도 있어 각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는지 확인이 필요
 - ※ 한-미 FTA의 경우 수출자 등이 자율적으로 증명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수출자와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간의 협력이 필요

2. 원산지포괄확인서

-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동일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장기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작성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복하여 사용 가능
 - ※ 원산지확인서 서식 제⑩번란에 최초로 공급한 일자와 포괄기간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원산지(포괄) 확인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1.공급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팩스
	주소(전자주소)	
2.공급처 (수출자 /생산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팩스
	주소(전자주소)	

공급물품 명세서

3.연번	4.품명·규격	5.적용대상 협정	6.품목번호 (HS6단위)	7.원산지 결정기준	8.원산지기준 충족여부		9.원산지	10.원산지포괄확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충족	미충족		
					[]	[]		
					[]	[]		
					[]	[]		
					[]	[]		
					[]	[]		
					[]	[]		
					[]	[]		

위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이 작성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작성·제공합니다.

작 성 자: (서명 또는 인)
 직 위:
 상 호 및 주 소:
 작 성 일 자:

(뒤쪽)

작성 방법																		
번호	기재항목	기재내용																
	발급번호	• 원산지확인서의 발급번호를 적습니다.																
1	공급자	• 물품을 실제로 공급한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주소(전자주소 포함)를 적습니다.																
2	공급처	• 원산지확인서의 물품을 공급받은 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주소(전자주소 포함)를 적습니다. • 공급처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에 적습니다.																
3	연번	•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을 적습니다.																
4	품명·규격	• 공급물품의 품명과 규격을 적습니다.																
5	적용대상 협정	• 해당 공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등																
6	품목번호	• 공급물품의 6단위의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7	원산지 결정기준	<p>•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원산지기준</th> <th>기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가. 완전생산 물품</td> <td>-WO</td> </tr> <tr> <td>나. 세번변경기준 - 2단위세번변경기준 - 4단위세번변경기준 - 6단위세번변경기준</td> <td>-CC -CTH -CTSH</td> </tr> <tr> <td>다.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 최대 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td> <td>-BD -BU -MC -NC</td> </tr> <tr> <td>라. 선택기준 - 실제 선택한 기준 예)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td> <td>-CTSH -BD</td> </tr> <tr> <td>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td> <td>-CC(CTH 또는 CTSH) + BD(BU, MC 또는 NC)</td> </tr> <tr> <td>바. 주요공정기준</td> <td>-SP</td> </tr> <tr> <td>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td> <td>-OP</td> </tr> </tbody> </table>	원산지기준	기재방법	가. 완전생산 물품	-WO	나. 세번변경기준 - 2단위세번변경기준 - 4단위세번변경기준 - 6단위세번변경기준	-CC -CTH -CTSH	다.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 최대 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BD -BU -MC -NC	라. 선택기준 - 실제 선택한 기준 예)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CTSH -BD	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CC(CTH 또는 CTSH) + BD(BU, MC 또는 NC)	바. 주요공정기준	-SP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OP
원산지기준	기재방법																	
가. 완전생산 물품	-WO																	
나. 세번변경기준 - 2단위세번변경기준 - 4단위세번변경기준 - 6단위세번변경기준	-CC -CTH -CTSH																	
다.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 최대 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BD -BU -MC -NC																	
라. 선택기준 - 실제 선택한 기준 예)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CTSH -BD																	
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CC(CTH 또는 CTSH) + BD(BU, MC 또는 NC)																	
바. 주요공정기준	-SP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OP																	
8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표시합니다. (예시) 원산지인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 충족"에 표시합니다.																
9	원산지	•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 "KR 또는" 한국산"으로 적습니다.																
10	원산지포괄 확인기간	• 최초의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적습니다. (예시) 2010.12.01(작성일) - 2011.11.30 ※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때에는 단수원산지확인서로 봅니다.																

5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위한 국내제조확인서 작성하기

1. 국내제조확인서란?

-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가 생산·수출자의 요청시 해당 재료를 국내에서 제조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 생산공정의누적*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어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데 용이하게 함
- * [한-미 FTA 6.5조 (누적규정)] 각 당사국은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생산된 경우 그 상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규정한다.

2. 국내제조확인서 활용예 (섬유산업)

- 국내제조확인서를 통하여 국내 생산공정 누적규정을 손쉽게 증명·활용하여 비역내산 원면을 사용하더라도 FTA 특혜 적용이 가능

<국내제조확인서 활용 사례>

공정	브리질산 원면 (HS 5201)	→ 한국에서 A사 면사 제조 (HS 5205)	→ 한국에서 B사가 면직물 제조 (HS 5208)	→ 미국에 수출
원산지 결정 기준		CC*	CTH** (5205로부터 제외)	
① 국내제조 확인제도 미도입	브리질산	브리질산	원산지 미충족	특혜수출 不可
② 국내제조 확인제도 도입	브리질산	원산지 충족(CTH기준, 5201→5208) B사가 A사 생산공정을 누적		특혜수출 可能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 5205호에서의 변경은 제외됨

- ① A사가 만든 면사: 브리질산 (5201→5205로 2단위가 변경되지 않음),
B사가 만든 면직물: 브리질산 (5205→5208로 4단위가 변경되었으나 5205호에서의 변경이므로 불인정)
- ② A, B사가 만든 면직물: 한국산 (5201→5208로 4단위가 변경되었고 5205호에서의 변경이 아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앞쪽)

1. 발급번호						
2. 국내제조포괄확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3. 공급자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성명)					
	전화/FAX					
	E-mail					
4. 공급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성명)					
	전화/FAX					
	E-mail					
5. 공급물품 명세						
연번	품명·규격	품목번호(HS6단위)	수량 및 단위	가격	주요생산공정	
6. 비원산지재료 명세						
공급물품	연번	품명·규격	품목번호(HS6단위)	수량 및 단위	가격	비고

7. 본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이 작성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이 확인서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며, 해당 문서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고, 이 확인서의 정확성이나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 확인서를 제공받은 관계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물품은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생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이 확인서는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총__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 작성자 성명	회사명
작성자 서명	직위
(년) (월) (일) ____/____/____	전화번호: FAX번호:

뒤 쪽

작성 방법		
번호	기재항목	기재 내용
1	발급번호	• 국내제조(포괄)확인서의 발급번호를 적습니다.
2	국내제조포괄 확인기간	• 최초의 국내제조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적습니다. ※ 국내제조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수 국내제조확인서로 봅니다.
3	공 급 자	• 물품을 실제로 공급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전자주소를 적습니다.
4	공 급 처	• 국내제조(포괄)확인서상의 물품을 공급받은 업체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전자주소를 적습니다. • 공급처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별지에 적습니다.
5	공급물품 명세	• 공급물품의 연번, 품명·규격, 품목번호(HS 6단위), 수량 및 단위, 가격 및 주요 생산공정 (물품의 주요 제조과정 및 공정방법)을 적습니다.
6	비원산지 재료 명세	• 공급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연번, 품명·규격, 품목번호(HS 6단위), 수량 및 단위, 가격 등을 적습니다.
7	확인내용	• 밑줄 부분에 첨부서류를 포함한 총매수를 적습니다.
8	작 성 자	•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작성을 담당하는 자의 성명, 회사명, 서명, 직위, 작성일 및 전화번호·팩스 번호를 적습니다.

6 관련 서류 보관하기

1. 수출 후에는 반드시 관련서류 보관

-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은 사후에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후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해야 함
- 위반할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벌금 등 처벌도 병행 가능

2. 수출자가 보관해야 할 서류 (9종)

- ①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 ②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사본
 - ③ 수출신고필증
 - ④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⑤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⑥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 서류
 - ⑦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⑧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⑨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제공한 원산지 증빙 서류
- ◎ 관련근거: FTA특례법 시행령 제 13조 제1항

3. 생산자*가 보관해야 할 서류 (7종)

*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제공한 생산자를 말함

- ① 수출자 또는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작성·제공한 서류
 - ② 수출자와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서
 - ③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④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 서류
 - ⑤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⑥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⑦ 재료 생산자가 생산자에게 제공한 원산지 증빙 서류
- ◎ 관련근거: FTA특례법 시행령 제 13조 제1항

4. 서류보관기간: 원산지증명서류 발급(작성)일로부터 5년

7 수출관련 의무와 책임

1. 한-미 FTA의 경우 원산지 규정에 수출관련 의무를 규정

-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수출국 세관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시 제출
- 원산지증명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당사자에게 신속히 통보
- 원산지증명서 허위 발급시 수입자가 처벌받는 것과 동등한 벌칙을 받을 수 있음

관련규정 수출 관련 의무 (협정 제6.20조)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제6.15조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 증명을 제출한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 당사국에 사본을 제공한다.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될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허위 증명에는, 수입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 또는 표시를 한 자국 영역의 수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에 동등한 벌칙을 적절한 수정을 가하여 적용한다. 그리고

다.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증명을 제출하였고 그 증명이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이에 기초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그 증명의 정확성 또는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변경에 대하여 그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증명을 제공한 모든 인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보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증명을 제공받은 모든 인에게 증명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서면으로 자발적으로 통보할 경우, 그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부정확한 증명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없다.



한 · 미 F T A 활 용 매 뉴얼

PART **4**

원산지 결정기준



IV 원산지 결정기준

1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개요

1. 원산지란?

- 사람이 태어나면 국적을 취득하듯이 상품도 원산지(Country of Origin)라는 나라의 국적이 존재
- 여러 국가의 재료를 조달하거나 생산 공정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 결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

2. 원산지결정기준이란?

- 협정에서 각 품목별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

원산지 결정기준의 구성

구분	종류			
일반기준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분가공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운송 원칙
	분야별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적기준 •대체가능물품 •부속품·예비부품·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기준 •세트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장·용기 •간접재료
품목별기준	공통기준	일반 주·부·류·호의 주		
	개별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결합기준, 선택기준		

2 원산지 결정의 기본원칙

1. 완전생산기준

- 한-미 FTA에서는 전적으로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을 완전생산기준의 원산지 상품으로 규정
- 완전생산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기준과 분야별 특례규정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



3 분야별 특례 (보충적 기준)

1. 누적기준(협정 제 6.5조)

- 한-미 FTA에서는 재료누적과 공정누적을 인정
 - (재료누적) 상대국 원산지 재료를 상품 생산국 재료로 간주
 - (공정누적)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에서 생산된 경우 자국 수행 생산공정으로 간주
- 각 협정별 '누적기준' 근거규정 비교

구분	미국	칠레	싱가포르	인도	아세안	EFTA	페루	EU
재료누적	○	○	○	○	○	○	○	○
공정누적	○	○	○	×	△*	×	×	×
근거규정	제6.5조	제4.5조	제4.9조	제3.7조	부속서3 제7조	부속서1 제3조	제3.6조	의정서 제3조

* 한-아세안 FTA의 경우 품목별원산지 기준에서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전생산된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부품목(굴,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은 공정누적 허용

2. 최소허용기준(협정 제 6.6조)

- ※ 미소기준, De minimis 또는 Tolerance rule이라고도 함
- (개념) 세번변경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비원산지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이면 그 해당 비원산지 재료를 포함하여 세번변경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
- (내용) 한-미 FTA의 경우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상품의 조정가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인정
- * 조정가치에 대해서는 p.53, 54의 설명 참조

○ 각 협정별 ‘최소허용기준’ 근거규정 비교

구분	미국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EFTA	페루	EU
가격	일반 품목 10%	8%	10%	10%	10%	10%	10%	10%
기준	농수산물 적용제외 원칙	적용제외 원칙	적용제외 원칙			적용제외 원칙	적용제외 원칙	
중량 기준	섬유 7%	8%	8%	10%	7%	10%	10%	8~35%
근거규정	• 제6.6조 부속서6나 • 제4.2조 제7항(섬유)	제4.6조	제4.10조	부속서3 제10조	제3.8조	부속서1 제5조 제2~3항	제3.7조	제5조2항 부속서1의 주석5.1 부속서2 목록

3. 대체가능 상품 · 재료(협정 제6.7조)

- (개념) 대체가능상품(Fungible goods or materials)이란 상품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상업적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를 의미
- (내용) 제품 생산과정에서 역내산 재료와 역외산 재료를 함께 사용하지만 재료별로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기업의 재고관리기법(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에 따라 재료의 원산지를 구분
 - * 단, 재고관리기법은 회계연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함
- 협정별 ‘대체가능 상품 · 재료’ 근거규정 비교

구분	미국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EFTA	페루	EU
적용범위	상품 · 재료	상품 · 재료	상품 · 재료	재료	재료	재료	상품 · 재료	상품 · 재료
근거규정	제6.7조	제4.7조	제4.11조	부속서3 제14조	제3.12조	부속서1 제11조	제3.8조	의정서 제11조

4.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협정 제 6.8조)

○ 수출입하는 완성품에 부착되어 인도되는 부속품, 예비부속품, 공구는 해당 완성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 부속품 등을 모두 함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완성품이 세번변경 기준 적용 대상인 경우)

- 단, 완성품이 부가가치기준 적용 대상물품인 경우 부속품 등은 원산지별로 구분해서 계상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의 예〉

- ▶ 부 속 품 : 전자제품코드, 덮개, 매뉴얼 등
- ▶ 예비부품 : 에어컨 먼지수집기, 예비 타이어 등
- ▶ 공 구 : 차량용 잭, 자전거 도구세트 등

○ 각 협정별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 관련 규정 비교

구 분	미국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페루	EFTA	EU	
세번변경 기준	무시	무시(세번변경 기준 충족여부 불문)					세번변경기준충족 필요		
부가가치 기준	원산지별 구분 계상	원산지별 구분 계상		무시	원산지별 구분 계상				
근거규정	제6.8조	제4.8조	제4.12조	부속서3 제12조	제3.9조	제3.10조	부속서1 제8조	의정서 제8조	

5. 상품의 세트 (협정 6.9조)

○ (개념) 세트물품이란 서로 상이한 세번에 해당되는 2이상의 물품이 조합에 대하여 해당 세트의 기능, 용도 등에 따라 구성물품 전체를 하나의 세번으로 분류한 물품을 의미

○ (내용) 세트내의 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세트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

- 단, 세트의 모든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해당 상품의 조정가치의 15%(섬유관련 제품은 1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로 인정

○ 협정별 '상품의 세트' 근거규정 비교

구분	미 국		EFTA, EU	페루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인도
	일반품목	섬유류			
세트물품 예외 인정 여부	○	○	○	○	×
비원산지물품 허용한도	조정가치의 15% 이하	조정가치의 10% 이하	공장도가격의 15% 이하	FOB가격의 15% 이하	×
근거규정	제6.9조	제4.2조 제8항	부속서 I 제9조 (EFTA) 의정서 제9조(EU)	제3.9조	×

6. 소매용 ·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 용기(협정 제6.10조, 11조)

-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 물품의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 (단, 통합품목분류표상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에 한함)
 - ① 해당 제품이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는 고려되지 않음
 - ② 해당 제품이 부가가치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원산지를 고려 (포장재료 및 용기에 대한 재료비를 산정하여 반영)
- (수송용 포장재료 및 용기) 포장재료 및 용기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하지 않음
- 협정별 '포장재료 · 용기' 근거규정 비교

구분	미국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EFTA	페루	EU	
소매용	세번변경 기준 적용시	무시	무시(세번변경요건 충족 여부 불문)						
	부가가치 기준 적용시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수송용	무시	무시							
근거규정	제6.10조 제6.11조	제4.13조 제4.14조	부속서3 제11조	제3.10조 제3.11조	부속서 I 제7조2	제3.11조 제3.12조	의정서 제7조	제4.10조 제4.1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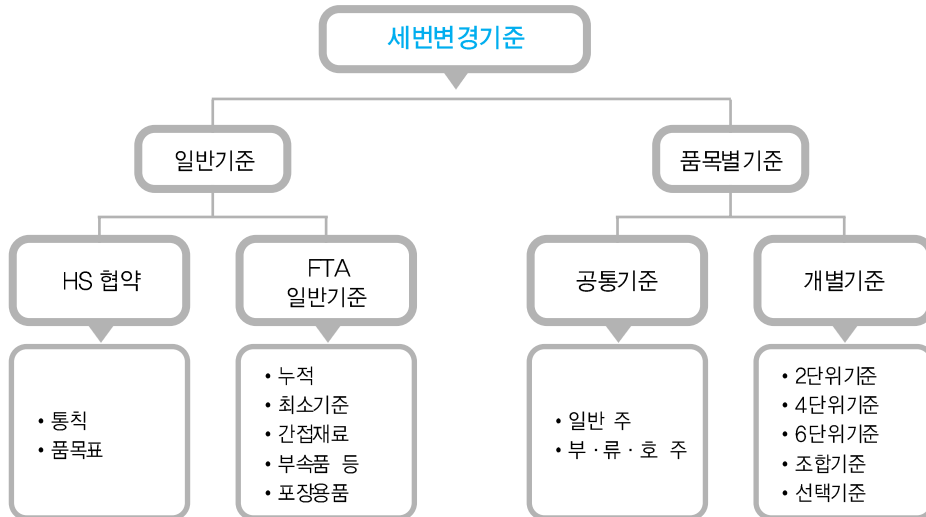
4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1 세번변경 기준

1. 세번변경 기준이란?

- 역내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세번(HS Code)과 다른 세 번의 물품이 생산 되면 그 물품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

세번변경기준 구조



- 통상 가공도에 따라 세번을 부여하므로 세번이 바뀌면 상품의 본질적 특성이 바뀌는 점에 착안한 기준으로, 대부분의 FTA에서 가장 널리 채택되고 있음

* 한-미 FTA의 경우 약 3,254개 품목으로 전체의 61% 차지

- 주로 2단위변경기준(CC), 4단위변경기준(CTH), 6단위변경기준(CTSH) 세 가지 종류가 있음

* CC(Change Chapter) : 2단위 변경기준

* CTH(Change of Tariff Heading) : 4단위 변경기준

* CTSH(Change of Tariff Sub-Heading) : 6단위 변경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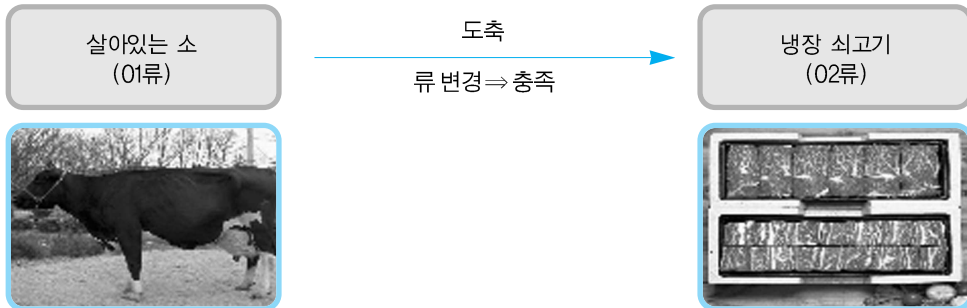
※ 원산지결정기준 정도 : CTSH → CTH → CC (강화된 기준)

2. 세번변경 판정 사례

■ 2단위 세번변경 판정

▷ 0201호 ~ 0210호 (한·미 FTA 품목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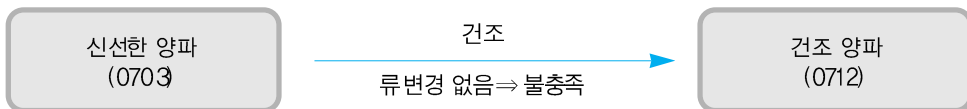
다른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105호 닭을 제외한다)에서 제0201호 내지 0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 도축공정의 경우, 다른 FTA에서는 불안정공정에 해당되거나 01류에서 02류로의 세번변경은 제외하는 예외규정이 있으므로 주의

▷ 07.01 ~ 07.14(한·미 FTA 품목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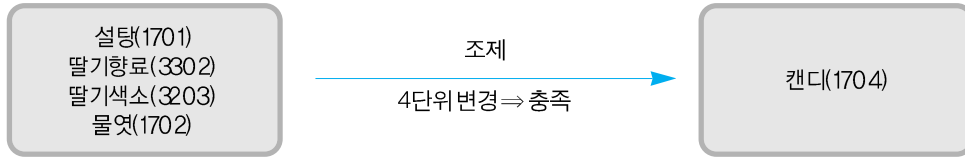
다른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701호 내지 07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 4단위 세번변경 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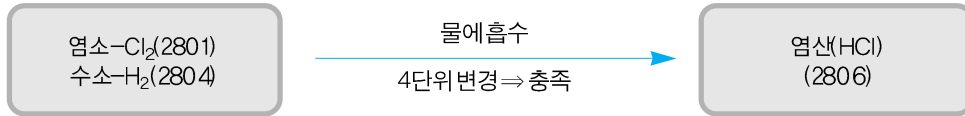
▷ 1704 설탕과자 (한·미 FTA 품목별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704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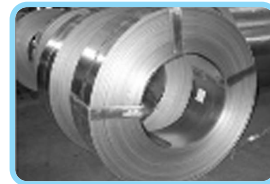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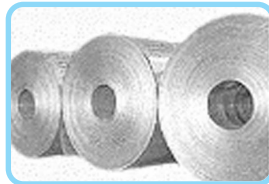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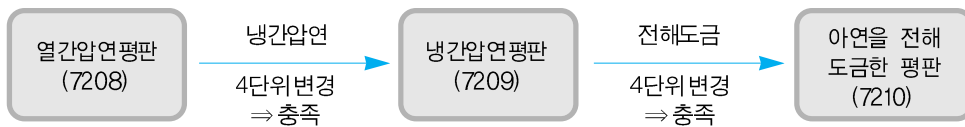
▷ 2801 ~ 2808 (한·미 FTA 품목별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801 호 내지 28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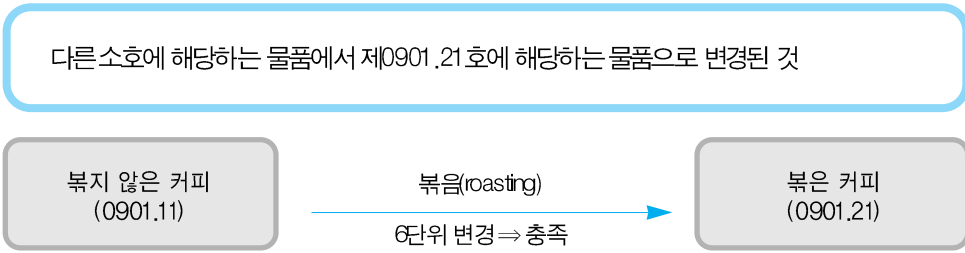
▷ 7208 ~ 7229 (한·미 FTA 품목별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208 호 내지 72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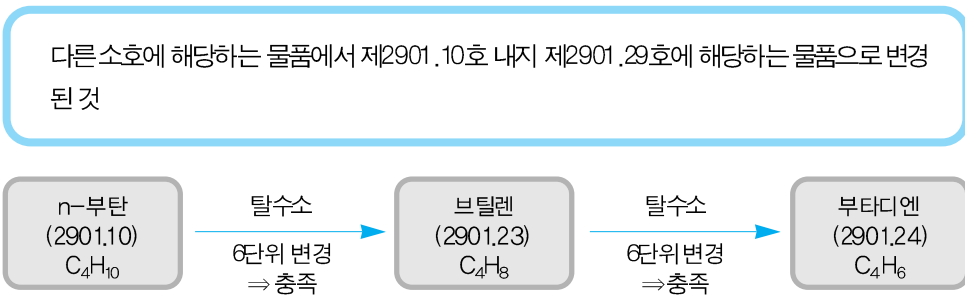


■ 6단위 세번변경 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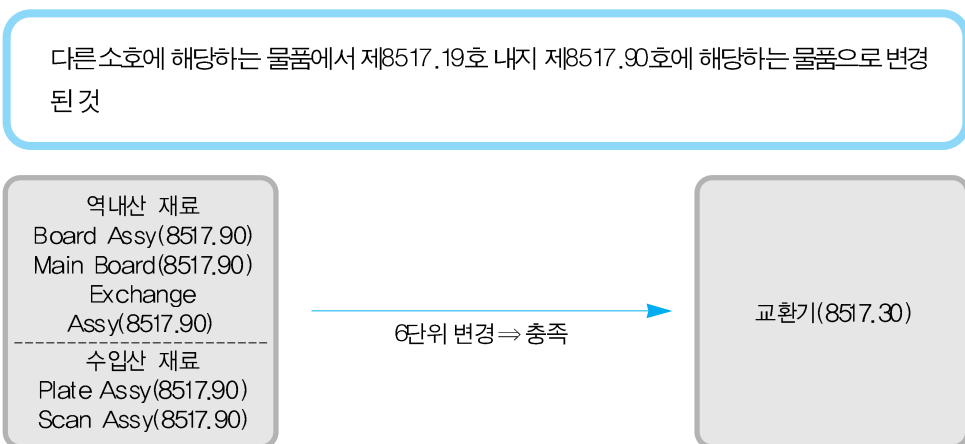
▷ 0901.21(한·미 FTA 품목별기준)



▷ 2901.10 ~ 2901.29(한·미 FTA 품목별기준)



▷ 8517.19 ~ 8517.90(한·미 FTA 품목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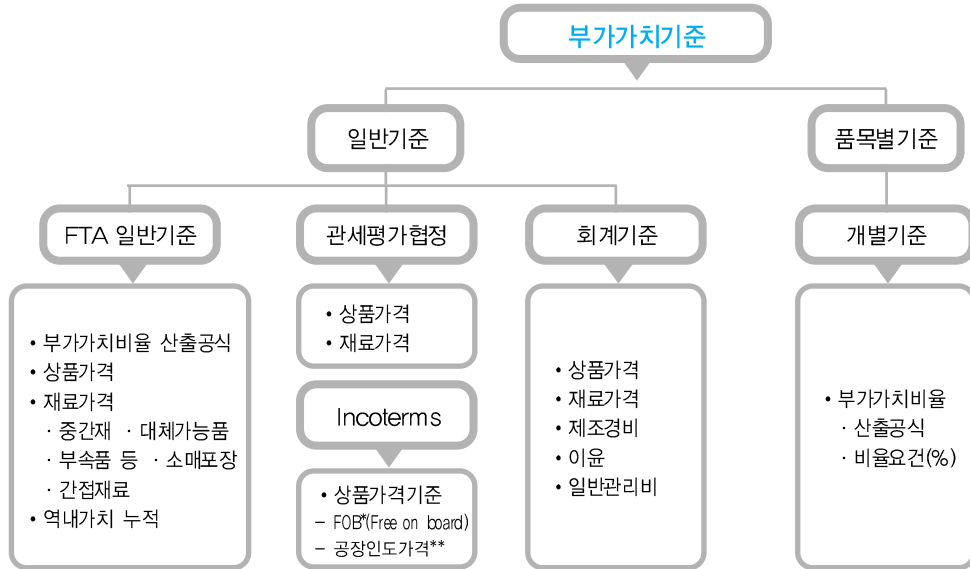


2 부가가치 기준

1. 부가가치 기준이란?

- 부가가치기준(Value Contents Criterion)은 2개국 이상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의 한 종류로서, 역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에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
 - 협정에서는 부가가치비율 산출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
 - (일반기준) 부가가치비율 계산공식, 상품 및 재료 가격 계상기준 등 규정
 - (개별기준) 품목별로 요구되는 부가가치비율 규정
- * 재료비에 포함되는 물품의 구체적인 범위, 제조경비·이윤 및 일반경비 등의 계상기준은 관세평가협정, 무역조건에 관한 국제규칙(Incoterms) 및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을 따르도록 규정

부가가치기준 구조



- * FOB(본선인도가격) : 최종 수출항구 또는 최종 수출지점까지의 수송비용을 포함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
 ** 공장도 가격(ex-works) : 최종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당사국 내 생산지공장에서 인도되는 제품에 대해 그 생산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

2. 부가가치 계산방식

- RC법(Regional Contents) : 역내 부가가치가 일정수준 이상일 것을 요구
 - * RC법 : 공제법, 직접법, 순원가법으로 구분
- MC법(iMport Contents) : 역외 부가가치가 일정수준 이하일 것을 요구

3. 부가가치 산출 공식 (한-미 FTA는 RC 기준으로 한정)

가. 공제법(Build-down Method)

- 공제법은 조정가치*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역내가치로 보는 방식

* 관세평가협정 제1조 내지 제8조, 제15조 및 그 상응하는 주해에 따라 결정된 가치로서, 필요한 경우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까지 제품의 국제수송에 수반되는 모든 운송, 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부과금 또는 경비를 제외하기 위하여 조정된 가치를 의미

→ 원산지재료비 비율이 낮고 가공비 비율이 높은 경우에 적용하면 유리

$$\text{부가가치비율} = \frac{\text{조정가치}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text{조정가치}} \times 100$$

나. 직접법(Build-up Method)

- 직접법은 생산자가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원산지재료비가 상품의 조정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역내가치로 보는 방식

→ 원산지재료비의 비중이 높은 경우 쉽게 부가가치 충족 가능

$$\text{부가가치비율}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text{조정가치}} \times 100$$

다. 순원가법(Net Cost Method)

- 순원가법은 공제법의 일종으로 총원가에서 판매비용 등 일정비용을 공제하여 계산

$$\text{부가가치비율} = \frac{\text{순원가}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text{순원가}} \times 100$$

* 순원가는 총원가에서 “로열티·운송·포장 관련 비용 및 비허용이자비용, AS비용, 마케팅비용”을 공제한 원가 (p.55 순원가법 참조)

* 한-미FTA의 경우 기업별 상황에 따라 2가지(공제법, 직접법) 방식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가능. 단, 자동차(부품 포함)의 경우 순원가법도 선택 가능

협정별 부가가치기준 요지

구분	미국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EFTA	페루	EU
요건	RC (35~60%)	RC (30~45%)	RC (45~55%)	RC (35~60%)	RC (25~40%)	MC (30~60%)	RC (35~50%)	MC (20~50%)
산출공식	공제법/ 직접법/ 순원가법	공제법/ 직접법	공제법	공제법/ 직접법	공제법	MC	공제법/ 직접법	MC
상품가격 계상기준	조정가치	조정가격	관세가격	FOB	FOB	공장도가격	FOB	공장도가격
근거	6.2조~6.4조	4.1조, 4.3조	4.1조, 4.5조	1조, 4조	4.3조	6.1조 마하,거	3.3조	5.1조 및 부속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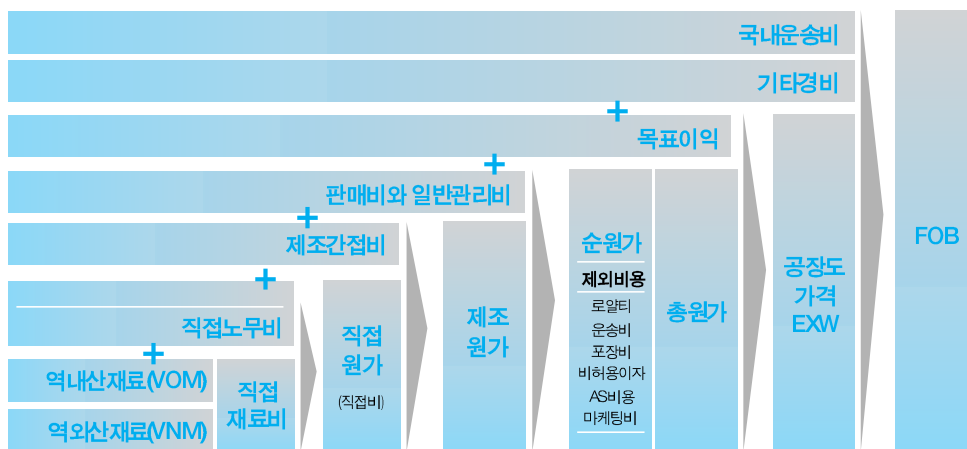
5. 부가가치 산출 시 기준가격 산정기준

가. 조정가치(공제법, 직접법)

○ 한-미 FTA의 공제법 및 직접법에서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있는 조정가치(Adjusted Value)는 FOB 수준으로 조정된 가격*

* 역내산재료비+역외산재료비+직접노무비+제조간접비+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목표이익+국내운송비 및 기타경비가 포함되어야 함

부가가치 산정 조정가격(FOB)의 단계별 원가구성



나. 순원가(순원가법)

- 순원가(NC)는 총비용(TC)에 포함되어 있는 관측·마케팅·판매후 서비스 비용(S), 로열티(R), 운송·포장비용(SP),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NAI)을 차감한 것

$$\ast NC = TC - (S + R + SP + NAI)$$

6. 부가가치 산출 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비 산정기준

가.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의 정의

(1) 원산지 재료의 정의

- 원산지 재료란 당해 상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 또는 투입물품이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은 재료를 의미

(2) 비원산지 재료의 정의

- 비원산지 재료는 당해 상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 또는 투입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에 의거 원산지로 인정받지 못한 재료를 의미

나.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비

※ 협정상의 「원산지 혹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라는 표현은 각각 원산지 재료비 또는 비원산지 재료비를 의미

-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비를 결정함에 있어 재료의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계상
 - (수입 재료) 당해 재료의 조정가치
 - (국내구입 재료) 생산자의 실제 지급가격
 - (자가생산재료) ① 일반경비를 포함하여, 재료의 생산에 발생한 모든 비용과 ②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부가되는 이윤에 상당하는 이윤액

다. 원산지재료비 및 비원산지재료비 가산 또는 공제요소

(1) 원산지 재료비 가산요소

- 원산지 재료에 대하여 다음의 경비가 원산지재료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그 경비가 재료의 가치에서 추가될 수 있도록 규정

원산지 재료비 가산요소

FTA	가 산 요 소			
미국(제6.4조1)	운송비 (국제+국내)	조세 (환급액 제외)	관세사 수수료	폐기물비용** (재활용분 제외)

* 운송비란 재료를 운송하는 데 발생한 화물운송비·보험료·포장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

** 상품의 생산에 있어 그 재료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과 손상물의 비용

(2) 비원산지 재료비 공제요소

- 비원산지 재료에 대하여 다음의 경비가 비원산지재료비에 포함되는 경우 그 경비가 재료의 가치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규정

비원산지 재료비 공제요소

FTA	공 제 요 소			
미국(제6.4조2)	운송비 (국제+국내)	조세 (환급액 제외)	관세사 수수료	폐기물비용 (재활용분 제외) 당사국 영역에서 비원산지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비

라.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비 산정기준시 고려사항

(1) 간접재료 : 원산지 결정시 간접재료비도 고려하여 계산

- (개념) 상품의 생산·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상품 또는 상품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나 설비의 운영에 사용되는 상품 (예: 연료, 예비부품, 안전장비 등)

(2)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함께 인도되는 상품의 부가가치 계산 시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당해물품의 원산지 여부에 따라 원산지 재료비 또는 비원산지 재료비에 포함함

(3)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재 및 용기

- 소매용 포장재료와 용기는 상품의 부가가치 계산시 당해물품의 원산지 여부에 따라 원산지 혹은 비원산지 재료비에 포함함

(4) 세트물품

- 세트물품이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으로 구성될 경우 모든 비원산지 물품의 가격이 해당 세트물품의 공장도 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그 세트물품 전체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다만, 섬유 또는 의류상품에 대해서는 세트물품의 조정가격에서 1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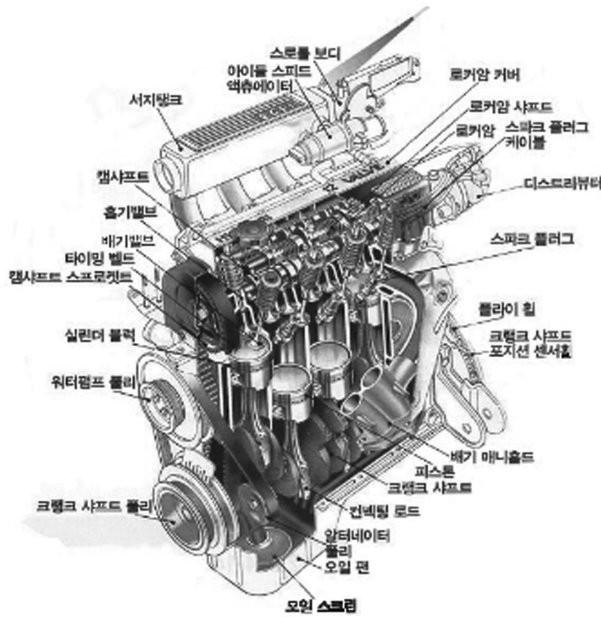
(5)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 (개념) 상업적 목적으로 호환 가능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 또는 재료로서, 곡물, 과일, 석탄 등을 신물과 볼트, 너트 등 범용성 부분품이 해당됨
- 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수입자가 원산지 상품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 각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를 물리적으로 분리한 경우
 - 생산 당사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는 평균법, 후입선출법 또는 선입선출법과 같은 재고관리기법을 사용한 경우

7. 부가가치 기준 적용 사례 (자동차용 엔진)

① 제품 및 부분품 품목번호

- 제품(엔진) : 8407.3
- 부분품



- ① 스로틀 보디 : 8481,80
- ② 시지탱크 : 8708,99
- ③ 캠샤프트, 크랭크샤프트 : 8483,10
- ④ 흡기밸브 : 8409
- ⑤ 배기밸브 : 8409
- ⑥ 타이밍벨트 : 5910,00
- ⑦ 캠샤프트 스프로킷 : 8483,90
- ⑧ 실린더블록 :
8409,91(불꽃점화식) 또는
8409,99(압축점화식)
- ⑨ 워터펌프 플리 : 8483,50
- ⑩ 크랭크샤프트 플리 : 8483,50
- ⑪ 로커암샤프트 : 8483,10
- ⑫ 로커암 : 8409
- ⑬ 스파크플러그 케이블 : 8544,30

②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한·미 FTA)

품목번호	원산지 기준
8407.31 - 8407.34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7.10호 내지 제8407.3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55퍼센트 이상, 또는 3. 순원기법 35퍼센트 이상

③ 가격 구성내역

구분	품명	원산지	품목번호	가격(₩)
재료비	실린더 라이너	일본	8409,91	12,000
	흡배기밸브	독일	8409 또는 8481	20,000
	가스켓	독일	8484.10	8,000
	실린더 블록	미국	8409,91	30,000
	피스톤	독일	8409,91	10,000
	기타의부품	한국		10,000
	소계			90,000
직접 노무비 및 경비				12,000
기간비용				20,000
공제비용(마케팅비, 판매촉진비, 로열티 등)				20,000
총원가				142,000

④ 원산지 결정

㉓ 세번변경기준 ⇒ 충족

- 엔진 제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는 “실린더 라이너, 흡배기밸브, 가스켓, 피스톤”이며, 이들 재료의 품목번호는 제8409호, 제8481호 및 제8484호로서 세번변경기준(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7.10호 내지 제8407.3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을 충족

㉔ 부가가치기준 ⇒ 적용 공식에 따라 결과 다름

- 공제법 적용시 ⇒ 충족

$$RVC = \frac{\text{조정가격} - \text{비원산지재료비}}{\text{조정가격}} \times 100$$

$$RVC = \frac{142,000 - 50,000}{142,000} \times 100 = 64.79\%$$

- 누적규정을 적용 한국 및 미국산 재료를 원산지재료, 기타 재료는 비원산지재료로 계산

○ 집적법 적용시 ⇒ 불충족

$$RVC = \frac{\text{원산지재료가격}}{\text{조정가격}} \times 100$$

$$RVC = \frac{40,000}{142,000} \times 100 = 28.17\%$$

- 누적규정을 적용 한국 및 미국산 재료를 합산하여도 불충족

○ 순원가법 적용시 ⇒ 충족

- 순원가 계산 기초자료

- 제품비용 : 102,000원
 - 원산지재료비(미국산, 한국산) : 40,000원
 - 비원산지재료비(독일산, 일본산) : 50,000원
 - 직접노무비 및 경비 : 12,000원

• 기간비용 : 20,000원

• 제외비용 : 20,000원

- 순원가 계산

• 순원가(122,000) = 총비용(142,000) - 제외비용(20,000)

- 부가가치비율 계산

$$RVC = \frac{\text{순원가} - \text{비원산지재료가격}}{\text{순원가}}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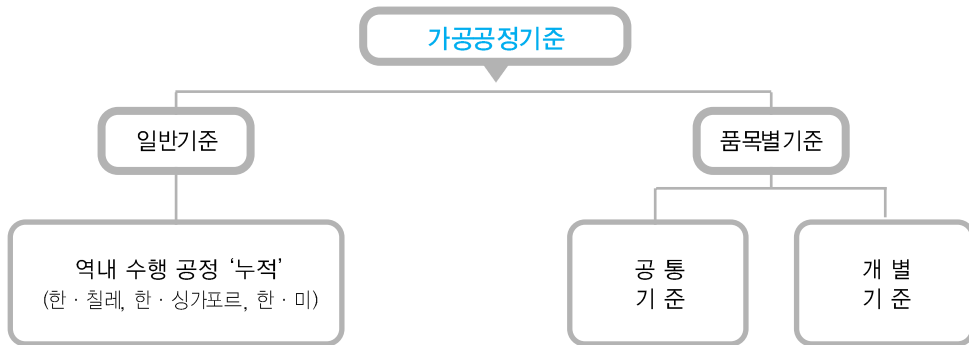
$$RVC = \frac{122,000 - 50,000}{122,000} \times 100 = 59.02\%$$

3 가공공정 기준

1. 가공공정 기준(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이란?

- 각 품목별로 주요 생산공정을 지정하고, 그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하는 기준
-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에 비하여 적용되는 품목의 범위가 좁은 편
- * ①어류 ②식물성생산물 ③섬유제품 ④석유제품 ⑤화학, 플라스틱, 고무제품

가공공정기준 구조



2. 품목별 가공공정기준

가. 어류(제3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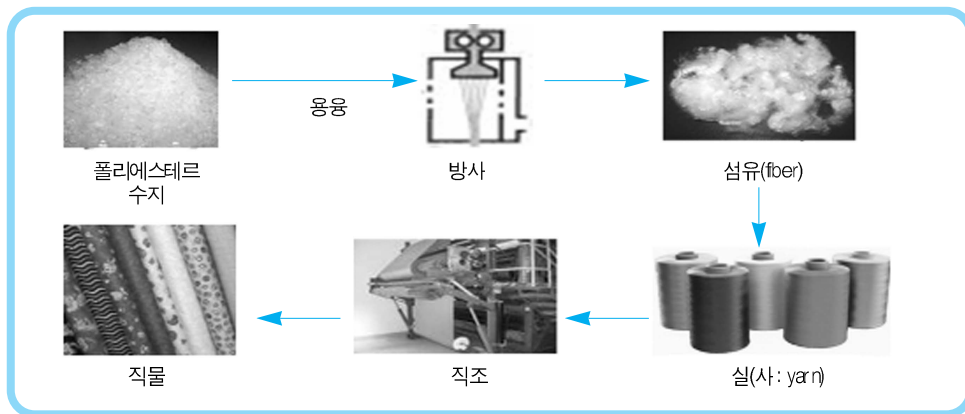
- 어류에 대하여 개별기준으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면서 공통기준으로 “비원산지 치어 또는 유생으로부터 양식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도록 규정
- ⇒ 역외산 치어를 역내에서 양식한 경우 세번변경 여부를 불문하고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나. 식물성 생산품(제6류-제14류)

- 식물성 생산품에 대하여 개별기준으로 대부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
 - 단, “해당하는 물품 중 비당사국에서 수입한 씨앗·인경·근경·삼수·접수 또는 기타 산 식물의 일부에서 성장한 농산물 및 원예물품은 그 성장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고 규정
 - ⇒ 역외산 씨앗 등을 심어 역내에서 재배한 경우 세번변경 여부를 불문하고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다. 섬유제품(제50류-제63류)

1) 제조공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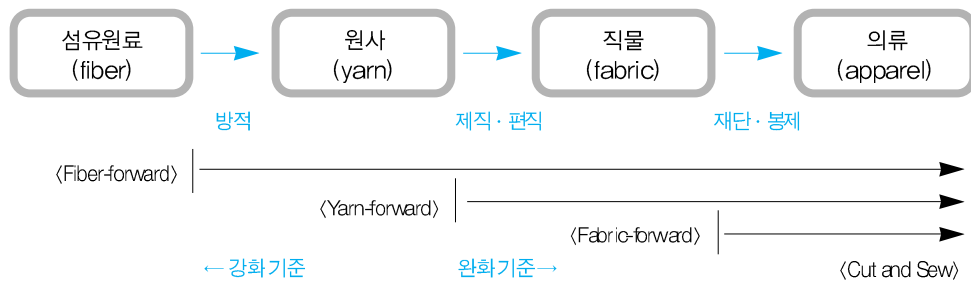
2) 품목분류



3) 공통기준

- 섬유제품은 원료에서 최종제품이 생산되기까지 여러 단계의 생산과정을 거치게 됨
 - * 원료→섬유(fiber)→방직과정→실(yarn)→직물(fabric)→의류
- 한·미 FTA는 의류의 공통 기본원칙으로 「원사기준(yarn forward)」을 채택
 -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실(yarn)을 만드는 공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직물을 만드는 공정, 재단·봉제과정까지 해당국에서 수행 필요

섬유류 품목별기준 구조



- 단, 한·미 FTA는 HS 61류~62류 의류에 대하여 공통기준*을 두어 원사기준을 완화
 - *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편직, 봉제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공급이 부족한 원료의 역외조달 허용

- 이해관계자(당사국정부, 섬유 구매·공급자 등)의 요청에 의하여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정하거나 다른 이해관계자의 반대가 없을 경우, 당해 원료의 역외 조달을 허용(직물·의류에 대해 각 최대 1억 SME*, 우리 수출의 10% 수준)

* SME(제곱미터 상당, Square Meter Equivalent) : 섬유·의류 제품의 계산 단위를 제곱미터로 환산한 것

⇒ 공급부족이 인정된 원료를 역외조달하여 생산한 상품에 대하여는 원사기준임에도 불구하고 특혜관세를 부여

FTA별 섬유류 품목별기준 비교

구분	미국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EFTA	페루	EU
직물 (50~60류)	CC/CTH	CTH	CTH	CTH or 염색/날염 or RVC40%*	CTH + RVC40%	2단계 실질변형	CC/CTH (염색/날염)	2단계 실질변형
의류제품 (61~62류)	CC+ 재단/봉제 + Lining 요건	CC+ 역내 원단 + 재단/봉제	CC+ 재단/봉제	(CC+ 재단/봉제) or RVC 40%**	fabric forward	2단계 실질변형	CC	제직기준
비고	yam forward 기본원칙	의류 위주의 yam forward	-	-	-	-	yam forward 기본원칙	-

라. 석유제품 (제27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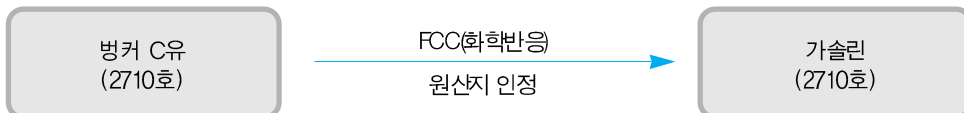
○ 한·미 FTA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목별로 세번변경기준을 두고 있으나, 제27류 주 (Note)에서 특정공정을 거친 경우에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 참고 :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27류 주 규정

제2710호의 목적 상, 다음 공정들은 원산지로 간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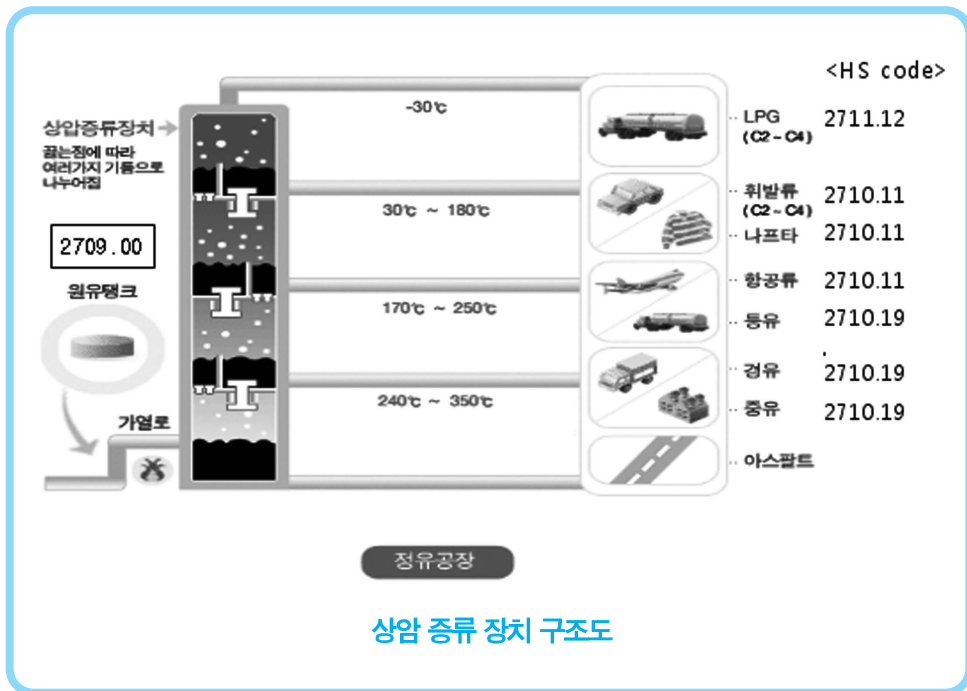
1. 상압증류법: 석유가 증류탑에서 끓는점에 따라 분획되고 증기를 냉각하면 상이한 액화 분획물이 되는 분리공정
2. 감압증류법: 분지증류법보다 낮지 않지만, 대기압 보다 낮은 압력에서 증류

⇒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원산지가 인정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특정 공정을 거치면 원산지물품이 됨



○ 석유 정제 공정

- 지하의 기름층에서 채굴하여 가공하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원유(Crude oil) 끓는점에 따라 증류(distillation)하여 LPG, 휘발유(Gasoline), 나프타(Naphtha), 항공유(Aviation spirit), 등유(Kerosene), 경유(Gas oil), 중유(Heavy Fuel Oil)로 각각 분리



마. 화학 · 플라스틱 · 고무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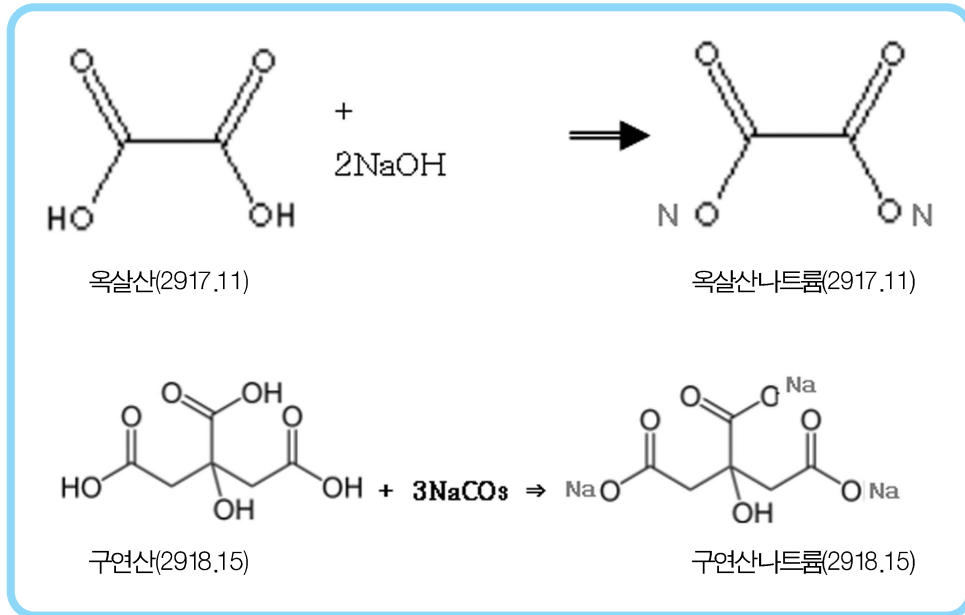
○ 한·미 FTA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6부(화학공업제품) 및 제7부(플라스틱제품, 고무제품) 주에서 화학반응, 정제, 혼합, 입자 크기의 변환, 이성체분리 등의 공정을 거친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 품목별로 정한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외에 상기 공정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 적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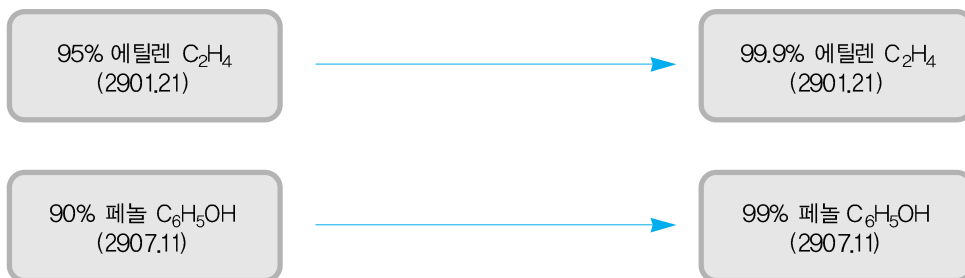
① 화학반응(Chemical Reaction)

- 반응전 재료의 세번과 반응후 상품의 세번이 동일하나 원산지 인정



② 정제과정(Purification)

- 정제전 재료의 세번과 정제후 상품의 세번이 동일하나 원산지 인정



※ 참고 :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6부 주 규정

주 1 : 따로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제6부의 규칙 제1항 내지 규칙 제7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이부의 류 또는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로 간주한다.

주 2 : 주1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이 이부의 원산지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 변경 적용이 되거나 부가가치 요건에 충족될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한다.

규칙 1 : 화학 반응

일방 또는 양당사국의 역내에서 화학 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물품(제3823호의 것을 제외한다)은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한다.

주: 이 부의 목적 상, 화학 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에서 원자의 입체자리 변경에 따라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 포함)을 말한다. 다음 사항들은 원산지 물품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 상, 화학반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 된 것
2.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3.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규칙 2 : 정제

정제 조건에 충족하는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로 간주된다. 다만, 정제는 일방 또는 양당사국의 역내에서 이루어지고 다음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

1. 불순물의 80퍼센트 이상 제거된 경우
2. 불순물의 감소 또는 제거 결과로 다음의 물품에 알맞게 된 경우:
 - 가. 의약품, 의약품, 화장품, 수의약, 또는 식품 등급 물질
 - 나. 분석, 진단, 실험실용 화학제품 또는 시약
 - 다. 미량원소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또는 성분
 - 라. 특수 광학용
 - 마.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무독성용
 - 바. 생명공학용
 - 사. 분리공정에 사용되는 담체
 - 아. 핵 등급용

규칙 3: 혼합

제30류, 제31류 또는 제33류 내지 제38류의 물품(제3808호는 제외한다)은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계획적이고 비율적으로 관리되는 혼합 또는 융합(분산을 포함한다)의 결과로 물품의 목적 또는 용도에 관련된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제품이 제조되어 원료 물질과 다르고 협정의 일방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 원산지로 간주한다.

규칙 4: 입자 크기의 변화

제30류, 제31류 또는 제33류의 물품은 계획적이고 조절된 물품의 입자 크기의 변형(수지 용해와 다음에 수반되는 침전에 의한 미소화를 포함하고 단순 분쇄 또는 압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의 결과로 원료와 다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결과물의 목적에 관련된 정의된 입자 크기, 정의된 입자 크기 분포 또는 정해진 표면적을 가진 물품으로 되어 협정의 일방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 원산지로 간주된다.

규칙 5: 표준 물질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표준 물질의 생산이 협정의 일방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은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한다.

이 규칙의 목적상, 표준 물질(표준 용액을 포함한다)은 제조자에 의해 보증된 정확한 순도 또는 비율이 표시된 것으로 분석, 검정, 또는 참조용에 적절한 조제를 말한다.

규칙 6: 이성체 분리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이성체 혼합물로부터 이성체의 유리 또는 분리가 협정의 일방 또는 양당사국의 역내에서 이루어진 것은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한다.

규칙 7: 분리 금지

제28류 내지 38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인조 혼합물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물질로 분리된 결과로서 일방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품목분류 변경된 물품은 유리된 물질이 일방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화학반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PART

5

FTA 활용 지원제도



V FTA 활용 지원제도

1 FTA-PASS 활용

1. 시스템 개요

- (목적) 원산지 판정·관리를 위한 원산지관리시스템
- (대상)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어려운 중소 수출업체 및 대기업 협력업체 등을 대상
- (유형) PC용(일반과 섬유/의류)과 Web용으로 구분

구분	PC 용	Web 용
사용방법	개인 PC에 설치하여 사용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사용
자료저장	개인 PC	운영서버
지원협정	4개협정 (인도, 아세안, EU, 미국)	9개협정 (인도, 아세안, EU, 페루, 칠레, EFTA, 싱가포르, APTA, 미국)
주요기능	원산지판정 원산지증명서(자율)발급 원산지확인서/소명서 발급	원산지판정 원산지증명서(기관, 자율)발급 원산지확인서/소명서 발급
종류	일반용 섬유/의류용	통합운영
운영	정식 운영 중	시범서비스 기간 ('12.01.01부터 정식운영 예정)

2. 주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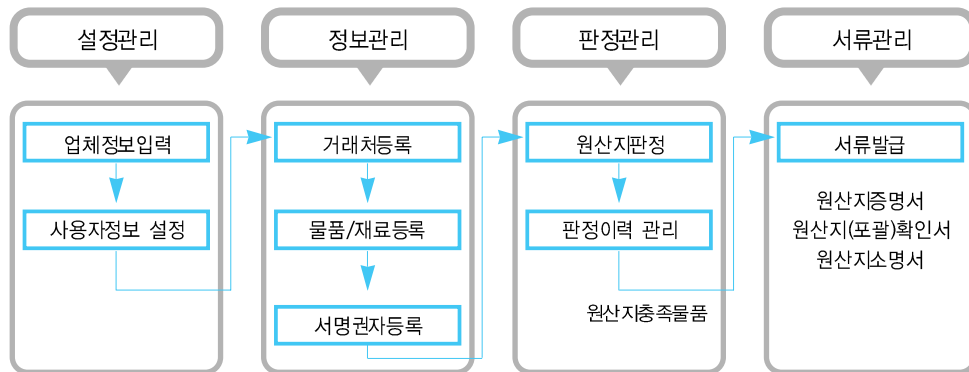
기능	설명
원산지 판정	입력한 제품에 대한 협정별 원산지 판정 시스템 구축
증명서류 발급	원산지증명서(기관발급은 UNH-PASS와 연계)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발급 기능
증명서류 보관	원산지증빙서류를 전자서류로 보관

3. 사용 방법

- (다운로드) 검색포탈시스템에서 '국제 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무료로 다운로드, 실행 가능

* 국제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 주소 : <http://www.origin.or.kr>

- (사용 절차) 메뉴 체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



4. 문의사항 등

- (매뉴얼) 설치된 프로그램에 내장
- (문의처) 국제원산지정보원 전산사업팀

전화 : 031-600-0724

메일 : fta-pass@origin.or.kr

2 중소기업 FTA 컨설팅 사업

1. 사업개요

- FTA 전문가*를 활용하여 FTA활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인증수출자 지정’ 및 FTA-PASS 활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 관세사(회계사), 전산관리자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

2. 사업내용

지원분야	세부 지원내용
FTA-PASS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제품·부분품에 대한 품목분류 수행 및 정합성 검토 ○ FTA-PASS 운용기법 지도 및 원산지 판정 ○ 회계정보 정합성 검토 ○ 각 협정별 요구기준에 따른 원가 조정 수행
인증수출자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분석 및 전자민원시스템(UNI-PASS)사용지도 ○ 수출물품 및 부품에 대한 원재료 확인 및 품목분류 ○ 인증요건 확인(원산지기준, 전담자지정, 법규준수 등) ○ 인증신청 서류 확인 및 신청, 반려시 보정

3. 대상기업

- FTA활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검토 항목	기준
① 신청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 ○ FTA 체결국(미국포함)에 수출한 실적이 있거나 예정인 기업
② 권장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작업 원산지관리업체
③ FTA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PASS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함으로써 특혜세율로 인한 경제적 실익 등 기대

중소기업의 범위(아래 가, 나외 요건의 모두 충족)

가. 업종,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업종(예시)	규 모 기 준
제조업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단, 상시 근로자수 1천명 이상인 기업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법인 제외

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유지되는 경우

3. 신청방법 등

- 컨설팅 일정, 신청방법 등은 관할지 본부세관에 문의
- 문의처

기 관 명	부서명	전화번호	주 소
서울본부세관	FTA 1과	02-510-1561	서울 강남구 안주로 218 http://www.customs.go.kr/seoul
인천공항세관	수출과	032-722-4203, 4195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 http://www.customs.go.kr/airport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	FTA과	051-620-6638	부산 중구 총장대로 20 http://www.customs.go.kr/busan
인천경기지역본부세관	FTA과	032-452-3394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 http://www.customs.go.kr/incheon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	통관지원과	053-664-5250	대구 동구 동대구로 467 http://www.customs.go.kr/daegu

3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1. 원산지 사전심사의 개요

-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의문이 있는 자(계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받는 제도

* 한·미 FTA 협정 제7.10조 사전심사

2. 한·미 FTA 원산지 사전심사의 내용

- (신청인 및 신청시기) 수입자·수출자·생산자 / 수입 前
- (심사 대상) 품목분류, 가격, 원산지, 쿼터나 관세율할당 적용 여부, 원산지 표시, 관세환급, 납기연장, 관세감면

가. 품목분류

나.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특정한 사안에 대한 관세평가기준의 적용

다. 관세환급, 납기 연장 또는 그밖의 관세감면의 적용

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마.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다른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된 후 어느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재반입된 상품이 제2.6조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에 따라 무관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바. 원산지국가 표시

사. 상품이 쿼터나 관세율할당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그리고

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사안

- (공표 의무화) 사전심사 결과 회신 후 인터넷 공표
-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90일
- 발급당사국은 사전심사가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이 정보에 기초하였을 경우 사전심사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

3.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절차

- (신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관세청장(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

- ①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전심사신청서
 - i) 신청인, 수입자 및 수출자(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 ii)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품목번호 및 가격
 - iii)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별 품명, 품목번호, 가격 및 원산지
 - iv) 당해 물품의 제조공정(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v) 사전심사를 원하는 구체적인 내용
 - vi)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 ② 거래계약서,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공정명세서 등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

- (보정)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의 신청사항을 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
- (반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반려

- ① 관세청장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② 당해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 ③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심사결과 통지) :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다만, 보정기간不算입)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사전심사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단,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사전심사가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
- (심사결과 이의제기) 사전심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원산지확인위원회 상정) 전례가 없는 사항 등의 사유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원산지 결정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원산지확인위원회」에 상정 가능

4.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내용 활용

- 세관장은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수입신고된 물품의 내용이 사전심사서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

5. 사전심사업무의 권한 위임

- 사전심사 업무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FTA 특례법 시행령 제28조의3)
 -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 및 이의제기의 처리,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및 변경내용의 통지의 권한 등

※ 기타 FTA에 관한 궁금증 및 의문사항은
고객지원센터 활용(1577-8577, <http://call.customs.go.kr>)

[별지 제22호 서식]

처리기간90일

사전심사 신청서

1. 신청인	<input type="checkbox"/> 수입자 <input type="checkbox"/> 관세사			
	(성명, 주소, 국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2. 수입자	(성명, 주소, 국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3. 수출자 또는 생산자	(알 수 있는 경우 성명, 주소, 국가)			
4. 신청물품				
품명	HS번호(6단위)	조정가격(\$)	물품 설명	
			구성, 생산과정, 용도 및 견본(가능한 경우)	
5. 원재료 내역				
원재료 품명	HS번호(6단위)	가격(\$)	원산지(결정근거)	생산과정
·				
·				
·				
6. 사전심사 신청내용				
① 물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② 비원산지재료가 세번변경이 일어났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③ 물품이 역내부가가치요건을 만족하는 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④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원재료 또는 물품의 조정가격의 계산을 위한 적절한 방법 <input type="checkbox"/> ⑤ 중간재 가치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비용을 할당하는 적절한 방법 <input type="checkbox"/> ⑥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하는 물품이 면세처리될 자격이 있는 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input type="checkbox"/> (상세 기재)				
7. 물품의 법적 지위 (다음 중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를 하고, 물품의 성상을 나타내는 간단한 설명자료 첨부)				
① 원산지 검증 <input type="checkbox"/> ② 행정적 심사 또는 불복청구 <input type="checkbox"/> ③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심사 <input type="checkbox"/> ④ 사전심사요청 <input type="checkbox"/>				
이 신청서에 기재한 모든 내용과 진술은 자신이 알고 있는 최상의 지식과 신뢰로 작성한 것으로서 진실하고 정확한 것임을 보증합니다. 만약 허위나 잘못 기재한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되거나 협정관세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_____		작성일자 _____		
신청인과의 관계 _____		(신청인 대신 작성한 경우)		

※ 만약 기재할 사항이 많은 경우다른 용지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한 · 미 F T A 활 용 매 뉴얼

PART **6**

원산지 검증



VI 원산지 검증

1 원산지 검증 개요

1. 원산지 검증이란 ?

- (협의)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 (원산지결정기준·원산지증명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 잡거나,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
- (광의) 원산지요건 이외에 관련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한 모든 특혜 요건(거래당사자·세율·운송경로·신청절차등) 또는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2. 원산지검증의 목적

- 불공정무역행위의 방지
- 제3국 물품의 우회수출입장지를 통한 국내산업보호
- 관세탈루 방지를 통한 세수증대
- 역내간 교역과 투자촉진
- 상대국의 검증요청 수행을 통한 FTA 이행관리

3. 원산지 검증 방법

- 수출원산지검증과 수입원산지검증으로 구분·실시하며, 각 FTA 별로 상이한 원산지검증방식이 적용
- 검증주체를 기준으로 직접검증(미주형)^{*}, 간접검증(유럽형)^{**} 및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을 혼합한 아시아형으로 대별

* 수입국 세관이 해외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 검증

** 수출국 세관이 수입국의 요청을 받아 자국 수출자를 대상으로 검증

협정별 원산지 검증방법 비교

FTA	미 국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 도	EFTA	EU	페 루
검증 방식	직접(수입국) 섬유 : 간접	직접(수입국)	원칙: 간접(수출국) 예외: 직접(수입국)	간접(수입국)	직· 간접 중 선택가능			
입회	수입국 입회가능	수출국 입회불가	입회불가	수입국 입회가능	수입국, 수출국 입회가능			

※ 한-미 FTA의 경우 섬유 및 의류를 제외하고는 미국 세관에서 수출자를 상대로 직접
검증을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 필요

4. 한-미 FTA 원산지검증 규정

- 검증 수단
 - ①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 요청
 - ②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질의
 - ③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 방문

* ①②의 경우 수입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수입 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
공하도록 주선할 것을 요청 가능
- 검증 결과 통보
 - ① 검증결과 당사국이 상품이 원산지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그 당사국은 수입자
에게 예비결정내용을 제공하고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② 검증에 대한 최종결과를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
- 섬유 또는 의류
 - ① 수입당사국은 수출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함께 수출자· 생산자 등의 사업장 방문
및 검증지원 가능
 - ② 모든 방문은 사전 통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 지는 것을 원칙

2 원산지 검증 대비 주요 확인사항

1. 원산지증명서의 요건 충족여부

① 발급주체의 적정성 여부

- 기관발급 : 지정된 기관 발급여부
- 자율발급 (한-미 FTA)

- 체약국 소재수출자가 발급한 것인지 여부
- 수출자가 수출관련 서류 보관의무를 지는 자인지 여부
-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통보서 등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

②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 경과 여부

- 협정에서 정한 유효기간내에 적용이 되었는지 여부 확인

한-미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한-인도	한-페루
4년	2년	1년	1년	6개월	12월	1년
제6,15조	제5,2조	제5,2조	제5,2조	부속서3 부록1 제8조	제4,5조	제4,3조

③ 증명서 양식의 적정성 여부

-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
 - 항목별 기재사항 누락여부
 - 기재사항이 사실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 사용된 언어가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언어인지 여부
 - 거래당사자 요건 충족 여부
 - 원칙 :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간의 직접 거래
 - 비당사국 중개인 개입(송품장 발행)시도 일정조건*하에 인정
- ※ 예 : 한- 칠레, 한- 아세안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중개인 정보 명시

④ 협정세율 적용 대상품목 및 세율의 적정성

- 협정관세 대상 품목 여부 또는 저세율 적용 여부
 - 수입 연도 또는 특정기간 해당 세율 적용 여부
 - 세율 적용 우선 순위 적정 여부
 - 협정세율이 낮은 경우 우선 적용
- (예외 : 반덤핑관세,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등)

⑤ 각 적용대상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확인

⑥ 제3국산 물품의 협정당사국 우회수입 여부

- 협정당사국으로 수입 후 원상태 재수출 여부
- 협정당사국에서 환적 또는 단순 기항하면서 원산지증명서 취득 여부

⑦ 자료보관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 각 당사자별로 협정에서 규정한 자료의 적정 보관 여부

3 원산지 검증에 따른 사후조치

1. 특혜관세적용 배제 및 부당이득 추징

〈배제요건〉

- ① 수입자, 수출자 · 생산자가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② 수출자나 생산자가 시설에 대한 접근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③ 수입자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신고나 증명을 제출하였음을 나타내는 행위유형을 적발하는 경우

2. 과태료

- 위반형태 별로 1천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천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자료 미제출자 - 조사 거부 · 방해 · 기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특혜세율 사후관리 위반 -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통보 받고 정정 · 보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신고 • 경정청구불이행자 - 무단 저세율 용도 사용자 등
FTA 특례법 제24조 제1항	FTA 특례법 제24조 제2항

3. 행정형벌

- 다음의 경우 벌금형 부과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밀유지의무 위반 세관공무원 - 과세자료 용도외 사용 세관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빙서류 허위/부정 신청 · 발급 · 작성 · 교부한 자 - 증빙서류 미보관 자 - 허위자료 제출자 - 고의로 자료 미제출자 - 특정물품 용도외 사용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 · 발급 · 작성 · 교부한 자

- ※ 관세사 등의 컨설팅을 받거나,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보유 및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하는 등 기업이 사전예방노력을 기울인 경우
⇒ 고의 여부 등을 판단시 일부 정상참작이 가능

4. 처벌배제

- 수입자에 대한 처벌배제 조항 (협정 제 6.19조)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경우에는 특혜관세대우에 대한 유효하지 아니한 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수입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 가. 수입자가 그러한 신청을 함에 있어 과실·중과실 또는 사기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납부하여야 할 모든 관세를 납부한 경우, 또는
- 나. 수입자가 그러한 신청이 유효하지 아니함을 인지하는 때에 신속하고 자발적으로 그 신청을 정정하고 납부하여야 할 모든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처벌배제 조항 (협정 제 6.20조)

어떠한 당사국도,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증명을 제공받은 모든 인에게 증명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서면으로 자발적으로 통보할 경우, 그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부정확한 증명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없다.